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이론

2014.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이란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란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란 세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 둔다.

목 차

I. 개 관	7
1. 일반 개황	7
2. 경제 개황	9
가. 이란의 주요 경제 지표	9
나. 이란의 수출입 동향	10
다. 이란의 외국인 투자 동향	12
3.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관계	15
4. 이란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17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9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19
III. 이란의 통관환경	22
1. 통관 행정 개요	22
가. 통관 행정 조직	22
나. 수입 허가 및 인증 제도	24
다. 수입 규제 제도	27
라. 관세율 제도	29
2. 이란제재와 통관 절차	31
가. 이란 제재	31
나. 수입 통관 절차	45
IV.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47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48
2. 수입 신고 및 세관의 심사 단계.....	49
3. 관세 납부	51
4. 물품 반출 및 환급 단계.....	52
참고문헌.....	54
〈부록 I〉 비즈니스 팁.....	55
〈부록 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59
〈부록 III〉 관세법.....	62
〈부록 IV〉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77
〈부록 V〉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신청)서.....	88
〈부록 VI〉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90
〈부록 VII〉 지정선사 현황.....	92
〈부록 VIII〉 등급별 수입 품목군.....	93
〈부록 IX〉 석유화학제품목록.....	94
〈부록 X〉 이란 공인 국제 표준.....	97
〈부록 XI〉 미국 재무부 SDN List.....	98
〈부록 XII〉 중계무역 식료·농산품(HS4자리 기준 238개).....	122

표목차

〈표 I -1〉 이란 국가 개황.....	9
〈표 I -2〉 이란의 주요 경제 지표.....	10
〈표 I -3〉 이란 수출입 동향	11
〈표 I -4〉 2013년 이란의 국별 수출입 현황.....	11
〈표 I -5〉 이란의 주요 수출입 품목.....	12
〈표 I -6〉 이란 투자 현황	13
〈표 I -7〉 이란 지역별 외국인 투자현황.....	14
〈표 I -8〉 업종별 외국인 투자통계.....	14
〈표 I -9〉 이란 교역현황.....	16
〈표 I -10〉 최근 對 이란 10대 수입 품목.....	16
〈표 I -11〉 최근 對 이란 10대 수출 품목.....	17
〈표 II -1〉 Doing Business 2015 이란 무역 분야 순위 비교	20
〈표 II -2〉 이란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20
〈표 II -3〉 이란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21
〈표 III -1〉 제재 조치 현황	36
〈표 III -2〉 기타 분야 제재 완화.....	38
〈표 IV -1〉 이란 통관 절차별 유의 사항.....	47

그림목차

[그림 Ⅲ-1] 이란 관세청 조직도.....	23
[그림 Ⅲ-2] 원화결제 프로세스	41

I. 개 관

1. 일반 개황

-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임
 -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해 남부에 위치하며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접경되어 있음
 - 면적은 165만km², 한반도 면적의 7.5배로 4계절이 구분되는 대륙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이며 북부 카스피해 지역은 고온 다습하며 우리나라 기후와 흡사함
 -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의 시차는 5시간 30분으로 서울 아침 9시는 테헤란 새벽 3시 30분임

- 수도는 테헤란(Tehran)으로 인구는 7,985만명(2013년)이며 주요 도시는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시라즈임¹⁾
 - 민족은 페르시아 51%, 아제르바이잔 24%, 길락-란다란 8%, 쿠르드 7%, 아랍 3%, 아르메니안 1%임
 - 언어는 페르시아어 53%, 터키어 18%, 쿠르드어 10%, 아랍어 2%를 사용함²⁾
 - 화폐 단위는 Iranian Rial(IR)임

-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중동 지역에서 시아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 중의 하나임
 - 시아파는 94%이고 수니파는 4%임
 - 수니파가 대부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1)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2)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 정부형태는 정교 일치 이슬람공화국으로 최고지도자 중심제임
 - 1979년 호메이니옹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성직자 주도 신정정치(theocracy) 구현함
 - ‘벨라야티 파키’(Velayat-e Faqih: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s)라는 통치 이념에 따라 이슬람교와 민주공화제적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음

-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산하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위치하며 최고지도자는 외교안보, 군, 정보기관,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삼권분립형 공화제적 기관에 추가로 헌법수호위원회, 국정조정회의, 국가지도자운영 위원회, 혁명수비대 등 이슬람 가치 수호를 위한 기관이 병존하고 있음
 -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사망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출함
 - 현 최고지도자는 하메네이로 1989년 6월 취임하였음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3회 이상 연임이 불가능함³⁾
 - 대통령은 부통령(10명), 장관(21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고 있음
 - 현재 대통령은 하산 로하니로 중동개혁 성향이며 2013년 8월 취임하였음
 -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을 불신임 시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3)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표 I-1〉 이란 국가 개황

항목	내용
공식국명	이란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수도	테헤란
국토면적	165만km ² , 한반도 면적의 7.5배
위치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해 남부에 위치함
인구	7,985만명(2013년)
정부형태	정교 일치 이슬람공화국
종교	이슬람교(시아파 94%, 수니파 4%)
의회	단원제(290석)
인종	페르시아 51%, 아제르바이잔 24%, 길락-란다란 8%, 쿠르드 7%, 아랍 3%, 아르메니안 1%
언어	페르시아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세계국가편람』; CIA country profile 2014

2. 경제 개황

가. 이란의 주요 경제 지표

- 이란은 에너지 및 식료품의 보조금으로 인해 저렴한 물가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돌아가자 2010년 3월 말부터 개혁법안이 시행되었음
 - 12월부터 휘발유 보조금 절감을 발표하여 에너지, 생필품의 급격한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이란 경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가지고 있음
- 보조금 삭감 이후로 높은 물가상승률은 2013년 기준 39.3%이며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실업률은 13.2%, 경제성장률은 -1.5%임

-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옴
 - 전문가들은 실업률을 13.2%보다 많은 20%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이란 젊은 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이란의 핵문제로 미국 및 EU의 은행 거래 및 보험 중단으로 무역에 차질이 증가하고 있으며 핵협상이 가장 큰 문제임
- 높은 실업문제 및 인플레이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UN 안보리와 미국, EU의 경제제재에 따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음

〈표 1-2〉 이란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¹⁾
경제성장률(%)	3.0	5.9	3.0	-1.9	-1.5
GDP(십억달러)	362.7	422.5	576.2	469.9	411.9
1인당 GDP(달러)	5,331	5,638	6,599	7,207	5,039
물가상승률(%)	13.5	10.1	20.6	19.9	39.3
실업률(%)	11.9	13.5	12.3	12.2	13.2
환율(IRR/달러)	9,864	10,254	10,616	12,176	12,260
수출(억달러)	883	1,127	1,448	670	609
수입(억달러)	692	754	778	700	644
외환보유액(억달러)	813	750.6	798.6	698.6	638.6

주: 1) 2013년은 추정치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이란의 수출입 동향

- 2014년 9월까지 이란 수출은 670억달러, 수입 7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총교역은 1,370억달러, 무역수지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함
- 이란 제재로 인해 2010년 이후 연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표 I-3〉 이란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9월)
수출	25,336	30,208	32,554	31,603	24,390
수입	62,370	56,865	52,803	45,432	39,830
무역수지	-37,034	-26,657	-20,249	-13,829	-15,440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4

- 주요 수입국 중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 등은 핵협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수입액의 하락세를 보임
- 이란의 핵개발 문제로 서방 세계가 경제제재로 사업을 보류, 철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있음
 - 유럽 대신 중국,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
 - 자국산 제품의 수출은 거의 없이 중계무역을 주로 하는 UAE의 실적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이란의 제2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표 I-4〉 2013년 이란의 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7,048.05	22.3	아랍에미리트	9,117.48	20.0
2	이라크	6,146.84	19.4	중국	8,520.42	18.7
3	아랍에미리트	3,600.74	11.4	우리나라	3,827.89	8.4
4	아프가니스탄	2,687.94	8.5	인도	3,719.52	8.1
5	인디아	2,506.17	7.9	터키	3,424.55	7.5
6	터키	1,679.93	5.3	스위스	2,711.84	5.9
7	투르크메니스탄	922.58	2.9	독일	2,427.86	5.3
8	파키스탄	656.46	2.0	네덜란드	1,288.17	2.8
9	이집트	493.81	1.5	이탈리아	891.95	1.9
10	아제르바이잔	484.21	1.53	영국	859.07	1.8

자료: 상기 수출통계는 석유수출 제외 실적, KOTRA 국가정보 2014

- 이란의 2011년 주 수출 품목은 석유이나, 이란 정부는 수출 통계 발표 시 원유 수출을 제외하고 발표하고 있음
- 이란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류, 철강류, 전기 기계류 등이 있음

〈표 I-5〉 이란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미네랄 연료 및 오일	7,512	기계류	11,320
2	유기 화학류	3,501	철과 철강류	7,917
3	플라스틱	3,068	전기기계	3,693
4	식용 과일과 너츠	1,900	특별주문	2,788
5	광석, 슬래그	1,041	플라스틱	2,642
6	비료	952	차량류	2,592
7	구리	862	곡물	2,411
8	철과 철강류	828	지방과 오일	1,683
9	섬유류	800	광학용품	1,506
10	화학류	785	약학용품	1,467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4

다. 이란의 외국인 투자 동향

- 이란은 실업률 해소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
 - 2013년에 들어선 로하니 정부는 제재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 중임
- Kish, Qeshm, Chabahar 등의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16개의 산업별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모든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석유화학, 석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임
 - 석유, 가스 분야는 원래 투자를 금지하였으나 1996년 이후 허용하고 있음
- 이란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시스템의 미비함과 투자법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
- 이란 투자청(OIETAI)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48억달러임
 - 2008년 16억달러에 비교하면 큰 증가 추세를 보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3억달러의 투자를 받음

〈표 I -6〉 이란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유입액	1,615	3,016	3,617	4,336	4,870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4, OIETAI

- 최근 이란 정부는 이란의 31개 모든 주에 투자유치서비스센터(investment service center)를 설립함⁴⁾
 - 투자제안에 대한 처리 속도 제고, 외국인 투자유치 단일창구 시스템(single-window system) 개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FDI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함
 - 외국인 금융자산 유치를 위한 이란기업인들과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수출 증진을 유도할 계획임
- 이란 지역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순임
 - 〈표 I -7〉에는 1993년부터 2012년 9월의 아시아 국가 중 인근 중동·아랍국가들의 투자수치가 포함됨

4) 이란 투자청(OIETAI)

〈표 I-7〉 이란 지역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천달러)

순위	지역별	건수	투자금액
1	EUROPE	265	13,752,570
2	ASIA	206	8,559,460
3	AFRICA	9	5,748,674
4	AMERICA	7	358,774
5	OCEANIC	1	9,975

자료: OIETAI

- 업종별 주요 투자로는 투자 승인액 기준으로 화학제품, 원유 파생품, 고무, 플라스틱이 제일 많았으며, 기초 금속과 천연가스 정제 순임

〈표 I-8〉 업종별 외국인 투자통계

(단위: 천달러)

순위	업종	건수	투자 승인액
1	화학제품, 원유 파생품, 고무/플라스틱	104	16,817,205
2	기초 금속	31	8,165,258
3	천연가스 정제/배급	4	3,606,430
4	관광	12	2,434,558
5	기타 광물(탐사/개발/처리)	12	2,251,715
6	우편/통신	4	1,694,820
7	발전/송전/배전	4	1,165,404
8	교통 설비/차량	31	854,184
9	빌딩/주택	13	851,799
10	식음료/담배	71	824,928

자료: OIETAI

-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음⁵⁾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5)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 국가정보, 2014

- 이란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 15년간 내국세 면제해줌
 - 투자 지분의 100% 소유를 소유할 수 있음
 - 노동법을 완하하여 적용함
 - 외국은행의 설립이 가능함
 - 무비자 출입국을 허용함
-
-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 석유화학 특별 지역의 경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3.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관계

- 우리나라-이란의 교역규모가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주춤함

- 2010년 7월부터 추가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됨
 - 원화 대금결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금결제 애로를 해소하고,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수출성장세를 이어감
 -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7월까지 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하향세를 기록함
 - 2013년 11월 핵협상 타결 후 양국 간 교역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나옴

- 이란은 2012년 우리나라의 제18위(2011년 제22위)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 비중 1.3%이며, 수입면에서는 제12위 (2011년에도 동일)로서 3.2%의 수입 비중을 나타냄

〈표 I-9〉 이란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597	15.2	6,068	32.0	5,465	12.2	4,481	-29.4
수입	6,940	20.8	11,358	63.7	7,027	-26.7	5,564	-34.9
총교역	11,537	18.5	17,427	51.1	12,492	-13.5	10,045	-32.8
수지	-2,343	33.6	-5,290	125.7	-1,562	-66.8	-1,083	51.3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 MTI 3단위 기준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은 원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원유, LPG, 석유제품 등 품목순입

〈표 I-10〉 최근 對 이란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2		2013		전년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원유	6,362	원유	5,134	-19.3
2	LPG	1,553	LPG	238	-84.6
3	석유제품	353	석유제품	126	-64.3
4	기초유분	92	알루미늄	24	-28.7
5	아연제품	64	기초유분	18	-80.9
6	알루미늄	34	아연제품	11	-82.9
7	기호식품	5	연제품	4	3.3
8	연제품	4	기타인쇄물	2	-7.3
9	기타인쇄물	2	동제품	1	52.1
10	동제품	0	기호식품	1	-70.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4, MTI 3단위 기준

- 2013년 우리나라의 이란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아래와 같이 영상기기, 종이제품, 합성수지 등의 순임
- 영상기기 90.3%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종이제품이 74.2%임

〈표 I -11〉 최근 對 이란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2		2013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1	합성수지	690	영상기기	493	90.3
2	철강판	609	종이제품	443	74.2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41	합성수지	399	-42.2
4	냉장고	310	철강판	316	-48.2
5	영상기기	259	냉장고	239	-23.0
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5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22	-34.9
7	종이제품	254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215	27.0
8	섬유 및 화학기계	223	자동차부품	134	-39.1
9	자동차부품	221	섬유 및 화학기계	133	-40.7
10	가정용회전기기	16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08	-57.6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4. 이란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 이란은 WTO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시리아밖에 없음⁶⁾
 - 2011년 12월 5년 동안의 시리아와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됨
 - 시리아와는 중요한 무역의 파트너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으로써 국가간 교역규모가 연간 5억달러로 크게 증가될 예정임

- 협정문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물품을 자유화시키는 것이 목표임⁷⁾

6)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 국가정보, 2014

7)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 국가정보, 2014

- 5년 동안 이란의 최저 기본관세율인 4%로 관세를 낮추는데 합의함
 - 시리아와 이란의 산업 및 농업과 관련된 88개 품목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임
 - 시리아의 품목은 가금류, 화훼류, 과일, 담배, 시멘트, 씨앗류, 비누, 산업세제, 직물류, 주방기구, 대중교통수단 등임
 - 이란 측 품목은 식용동물내장, 호두, 버섯, 꿀, 커민(열매), 마늘, 사과, 가죽류, 여행 가방류, 핸드백, 장갑, 가죽벨트, 카펫류, 신발류 등임
- 협정문의 첫째 항목에는 양국의 상업, 투자, 금융, 통관, 농업, 축산업, 관광업, 성지순례, 보건, 석유가스산업 프로젝트 등 분야의 내용이 적혀있음
- 둘째 항목에는 항공, 육상, 해상철도, 운송 관련 분야의 협정이 명시됨
-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는 1985년 경제협력기구로 설립됨⁸⁾
- ECO의 가입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10개국임
 - ECO의 본부는 테헤란이며 최초로 만든 국가는 터키, 이란, 파키스탄임
- 자유무역협정 전 단계인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파키스탄과 체결하였음

8)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4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 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4년에 발간된 「Doing Business 2015」는 2014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 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신(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5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의 무역 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 분야에서 2014년 보고서에서 3위에 올랐던 우리나라는 2015년 보고서에서도 3위에 오름

〈표 II-1〉 Doing Business 2015 이란 무역 분야 순위 비교

구분	이란	Middle East & North Africa (평균)	OECD (평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수출필요서류(개수)	7	6	4	6	3
수출소요시간(일)	25	19.4	10.5	13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350	1,166	1,080	1285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11	8	4	8	3
수입소요시간(일)	37	23.8	9.6	17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555	1,307	1,100	1,309	695
무역 분야 순위	148		-	92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Iran, Islamic Rep.」

□ Doing Business 2015에서 이란은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9국 중 130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 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148위를 기록함

○ Doing Business 2014 에서 종합적 사업의 용이성 순위 132위, 무역 분야 순위 155위에 올랐음

〈표 II-2〉 이란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구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日)	비용(달러)	소요기간(日)	비용(달러)
서류준비	12	270	24	330
세관통관	2	175	2	220
항만(터미널)	4	225	5	250
내륙운송	7	680	6	755
합계	25	1,350	37	1,555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Iran, Islamic Rep.」

- 이란의 해상 수출에 있어 컨테이너 당⁹⁾ 약 1,35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7가지임
 -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25일이 소요됨

- 이란 해상 수입 시 컨테이너 당 약 1,55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10가지임
 - 서류 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37일이 소요됨

〈표 II-3〉 이란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수출 시 필요서류	수입 시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Customs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Technical standard certificate (기술표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argo release order(화물반출지시서) ○ Certificate of Conformity(관련기관의 품질인증서) ○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Cover letter from Ministry of Trade(커버레터) ○ Customs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Document (receipt) certifying payment of customs fees(지불영수증)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 Registration form/order with the Ministry of Trade(통상부 신청서)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 Iran, Islamic Rep.」

9)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산정한 금액임

Ⅲ. 이란의 통관환경

1. 통관 행정 개요

가. 통관 행정 조직¹⁰⁾

- 우리나라 관세청과 유사조직으로 Islamic Republic of Iran Customs Administration (IRICA)이 있으며 재무경제부 소속임
 - 중앙 본부는 8개의 지사, 세관장 사무실, 테헤란의 세관, Imam Khomeini 공항 세관 감독을 통제함
 - 8개의 지사는 이란 전역에 걸쳐 다른 지역의 세관을 통제 관리함
 - 자유무역 지역과 특별 관세구역 지역, 페르시아만 섬들을 합쳐 144개의 세관이 있음

- 이란 중앙 본부는 세관을 지도, 조정, 감독하며 법률과 지시 사항을 알리고, 법률 및 다른 조치들을 제재함
 - 이를 위해 세관장 밑의 4개의 부서는 세관장의 감독하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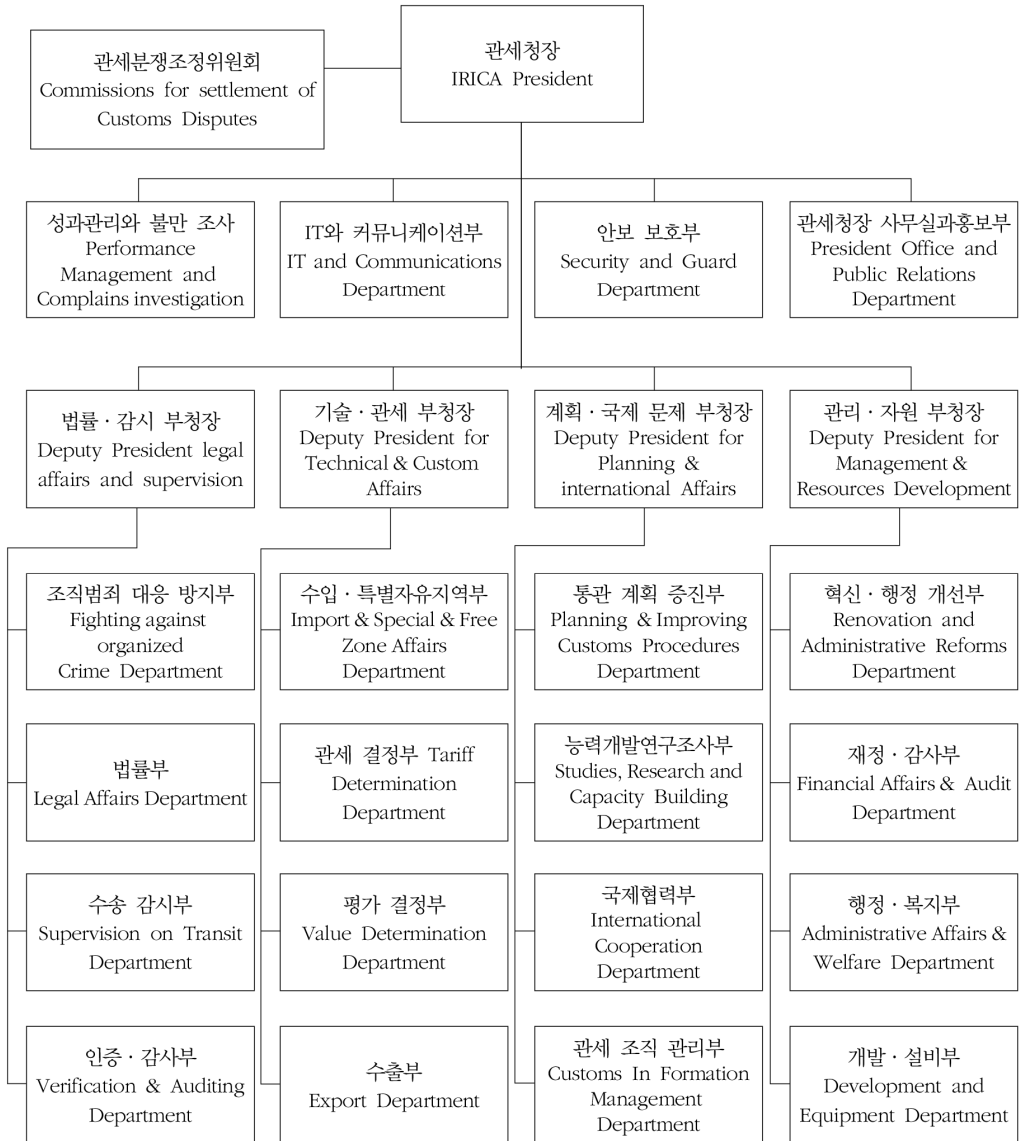
- 4명의 부처장이 있으며 각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있음
 - 계획·국제 문제 부처장 밑에는 통관 계획 증진부, 능력개발연구조사부, 국제협력부, 관세 조직 관리부의 4가지 부서가 있음
 - 기술·관세 부처장 밑에는 수입·특별자유지역부, 관세 결정부, 평가 결정부 수출부가 있음
 - 법률·감시 부처장 밑에는 조직범죄 대응 방지부, 법률부, 수송 감시부, 인증·감사

10) 이란 관세청 홈페이지

부가 있음

- 관리·자원 부청장 밑에는 혁신·행정 개선부, 행정·복지부, 개발·설비부, 재정·감사부가 있음

[그림 Ⅲ-1] 이란 관세청 조직도



자료: 이란 관세청 홈페이지

나. 수입 허가 및 인증 제도

- 이란 정부는 2010년부터 미국 및 EU의 이란제재 강화로 인한 이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을 통제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불필요한 품목의 수입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수입 서류 절차의 까다로운 심사로 수입에 필요한 이란 수입업자의 요청 서류가 많아지고 있음

- 2012년부터 이란은 수입제품 품질관리를 주요 목표로 삼음
 -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of Iran)와 협력해 불량제품을 없애려고 노력함

- 물품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통관이 가능했으나, 이란의 품질 강화로 사전에 검사를 받는 수입승인이 필요함
 - 이란 수입절차의 첫 단계인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P/I)과 수입허가 취득에 앞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수입업자는 원산지 국가의 인정되는 연구소로부터 인증서를 받거나, 사전에 이란에 샘플을 보내어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은 총 22개이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검수검정협회¹¹⁾를 통해 알 수 있음¹²⁾

-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란 수입업자가 제품의 특성에 따른 관계기관의 허가가 필요함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위생, 의료 및 식품 의약 같은 소비재의 경우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¹³⁾의 허가가 필요함

11) 〈부록 II〉 참조

12)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4

- 담당부서는 Food and Drug Department, Import section임
 - 선적에 앞서 샘플을 보건부에 전달하여 승인을 받고 표준규격 심사를 통과해야 함
 - 위생과 안전에 관련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수입이 허가됨
 - 보건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E, FDA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결정까지는 보통 45~60일이 걸림
- 자본재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의 ASNAF¹⁴⁾ 및 소비자보호기관(Organization for protecting right of end-user and Manufacturer)¹⁵⁾에서 허가가 필요함
- 물건의 생산에 관련되며 AS가 필요한 기계·장치류를 자본재로 분류함
 - ASNAF의 담당부서는 ASNAF Department, Import section임
 - 소비자보호기관 담당부서는 Capital Goods Department임
- 이란코드시스템(Iranian National Products and Services Classification and Codification System)은 수입의 모든 절차를 코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말함
- 유통 과정이 투명화되어 밀수품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음
 - 이란의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유통 및 무역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임
- 이란 수입업자는 매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online order registration)에 이란코드를 받아 입력해야 함
- 이란 코드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미리 이란코드를 준비하여 제품에 부착해야만 함
- 중국 불량품의 문제로 중국이 원산지인 경우에는 선적 전에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함
- 중국 제품의 불신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통관이 불가하며 공급자와 이란업체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됨

13) 웹사이트: www.behdasht.gov.ir, 전화번호: +98-21-6640-6663, 6695-4440

14) 웹사이트: www.asnaf.ir, 전화번호: +98-21-8889-3804

15) 웹사이트: www.cppo.ir, 전화번호: +98-21-2205-9371~7

- 수출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이란 대사관 인증 서류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 요구가 없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수입업자에게 L/C 개설 전에 대사관 인증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 사전에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데 도움이 됨

-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에서 지정하는 필수적인 표준규격의 물품의 경우 송장(invoice)에 연관된 규격 정보가 들어가야 함¹⁶⁾
 - 이란 수입업체의 경우 수출업체에게 이러한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규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시 통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CE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며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입업체와 함께 이란 표준 규격을 받아 통관을 할 수 있음

- 이란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포함한 58개 품목에 대해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납품을 할 때 이란산만 가능하도록 하였음
 - 컬러 TV,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카세트테이프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경비행기
 - 오븐, 정수기, 계산기, 가구, 주방 및 식탁 용기, 도자기 및 유리 제품
 - 혈압계, 가스 쿨러, 재봉기, UPS, 계측기기, 건축자재 등

- 58개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 품목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정부관련 기관에만 제한되어 있음
 - CKD¹⁷⁾ 방식의 현지 조립 비중이 높은 편으로 완성품 수출 비중은 약한편임

- 이란 제재로 인해 시장의 상황이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국산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¹⁸⁾

1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란 음료 미니시장조사 2013

17) 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을 말함

- 이란 국내 조달이 힘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함

다. 수입 규제 제도

- 이란 정부는 석유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¹⁹⁾
 -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관세 및 비관세를 정책수단을 활용함
 - 자국 내 생산을 위한 재료(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를 부과함
-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사치성 소비재는 100% 이상 고관세를 적용함²⁰⁾
 - 산업화 정책을 위한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산업 관련 기계류 등은 수입허가를 면제해줌
 - 국내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는 상업광공업부의 사전수입 허가가 면제임
- 이란의 밀수 제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란산 제품의 질이 좋지 않아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의류, 주류 등이 있음
 - 까다로운 수입검사와 관료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수입 승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밀수품이 늘어나고 있음
- 현지의 높은 수요로 인해 이란 수입업자들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의 Kish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음²¹⁾
 - 이같은 밀수는 이란 총수입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란 음료 미니시장조사 2013

19)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20)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21)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 상업광공업부는 수입허가부서의 사전수입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비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은 수입허가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수입을 장려하고 있으나 자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은 수입허가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음
 - 이란 정부의 수입제한 정책에 대응, 산업협력을 통한 CKD 방식 수출 등 현지 투자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함

- 모든 수입품목은 승인품목(Authorized), 조건부 승인품목(Conditional), 금지품목(Prohibited)으로 분류 됨²²⁾
 - 자동 승인품목: 없음
 - 조건부 승인품목: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되나 자동차, 화장품 등의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100% 내외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금지품목: 무기류, 마약, 술 등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상무부에 수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상업광공업부 등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나머지 약 20%는 상무부에서 수입 신청서 접수 시 지정하고 있는 상업광공업부 등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 상업광공업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함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 허가를 받은 후에는 수입자가 수입 금액의 0~6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함
 -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L/C를 개설하고 수입을 시작함
 - 정부부처 및 기관별 수입할당액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외환 예산 사정에 의거해 분배됨

22)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 이란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산업보호라는 명목 아래 국내의 제조업체가 품질 및 물량에 상관없이 상무부에 요청을 하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 미승인 품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씀
 - 2001년 7월에는 수입을 승인하는 대신에 관세를 높이고 있음
 - 2004년에는 이란 상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완화 및 수입관세 인하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음
 - 2012년 7월말부터 모든 수입품을 10개 우선수입 품목군으로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품목군은 <부록 Ⅷ> 참조

- 수입규제사례로 이란 상무부는 2005년 10월 17일 한국산 수입 견적송장(P/I)에 대해 승인을 중단한 적이 있음²³⁾
 -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란 핵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를 제재하려는 것으로 해석함
 - 그 후 11월 5일에는 수입 승인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자동차 부품 등 이란의 산업에 요구되는 원부자재류에만 제한되었음
 - 가전 완제품이 빠졌기 때문에 완전한 해제로 볼수가 없음
 -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견적송장 승인중단은 해제되었고 우리나라 물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수입이 규제하지 않았음

라. 관세율 제도

- 이란은 국내 산업 보호를 중시하며, H.S 분류방식을 채택(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1993))하고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²⁴⁾
 - 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중이며 ECO 국가는 예외를 두고 있음
 - 상대 국가가 덤핑이나 다른 조건을 악용하여 이란의 동종 산업군에 피해를 준다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23)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 국가정보, 2014

24)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 이란은 쌍무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관세율 적용을 고려 중이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1개의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됨
 - 파키스탄과 특혜관세협정을 체결,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표준관세율에서 19%씩 인하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음
 - 원자재, 부품 등 자본재는 약 10%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며 시계, 가구, 자동차 등은 약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된 가격과 전적송장(P/I)상에 기록된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추정되는 가격에 의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함
 - 관세부과의 투명성이 낮으며 현재까지 이란당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음

- 2008년 5월 이란의 아래와 같은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결정
 - 핸드폰 완제품 수입관세 25%에서 10%(SKD²⁵⁾ 관세율은 10%에서 4%)
 - 냉장고 수입관세 41%에서 31%
 - LCD TV 수입관세 46%에서 36%
 - 진공청소기 수입관세 46%에서 31%
 - 기타 가전제품 수입관세 51%에서 31%
 - 원래 자동차 수입관세율 역시 90%에서 75%로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 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됨

- 2012년 12월 관세율 적용환율을 정부환율에서 외환거래소환율로 바꿈에 따라,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관세율을 40~50% 낮게 적용하고 있음

25) 부분조립생산(semi-knockdown)

2. 이란제재와 통관 절차

가. 이란 제재²⁶⁾

1) 이란 제재와 일시적 유예

- 이란 제재와 근거는 UN 안보리 결의 1696, 1737호, 1747호, 1803호, 1929호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포괄적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대통령명령 제13590호, 2012년 국방수권법, 이란 위협감축법, 2013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크게 확대함
 - EU는 EU Council Regulation 267/2012를 통해 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이 미국과 EU의 이란 제재 규정내용과 유사함

(1) 2002년 제재의 시작

-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됨
 - 미국은 2006년 이란제재법(Iran Saction Act, ISA)을 만들
 - UN은 2006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696호를 제정함

- 2010년 강력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929호가 채택되고 미국과 EU 등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기 시작함
 - 미국은 2010년 제재의 범위를 확대한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을 만들고 이란을 제재함

26) 전략물자관리원

(2) 2013년 7월 1일 제재 강화

- 2013년 1월 2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국방수권법 2013에 의거해 2013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의 대이란 교역이 금지됨
 - 이란의 에너지관련 상품, 서비스 거래가 해당되며 이란산 석유 수입은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된 경우 제재 면제함

- 기존 제재분야(석유자원, 정유, 석유화학)에 한하며 금액한도 없이 관련 거래 시 모두 제재 대상임
 - 석유자원개발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국방수권법(IFCA)의 제재를 반영하여 석유자원개발과 관련한 이란과의 모든 수출입을 제재함
 - 석유자원개발 관련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금지대상임
 - 이란위협감소법(TRA)을 반영하여 정유제품의 이란 내 운송, 수입, 수출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됨
 - 이란위협감소법(TRA) 제재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금지대상임
 - 석유화학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임

- 국방수권법(IFCA)과 행정명령 제재에 따라 조선, 해운, 항만 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금지대상임
 - 자동차 분야(승용차, 트럭, 버스,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을 포함)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임
 - 이란 해운·조선·항만 분야 관련 상품·서비스 거래로 유조선 등 선박 제공, 엔진

등 부품 제공, 선박검사 및 수리 서비스, 항만시설 확장 및 개선공사 등이 포함됨
 - 이란 항 비제재품목의 운송 및 이란 항구 정박 등 항만시설의 단순 이용은 해당 되지 않음

- 이란의 원료(Raw) 금속 또는 반제품(Semi-finished) 금속 거래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은 대미 수출 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이란혁명수비대에 의해 통제되는 분야와 관련된 거래
 - 미 재무부에서 지정한 자(SDN List)²⁷⁾와의 거래
 - 이란 핵, 군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거래
 - 상기 제재분야 최종 사용자로 재판매·재이전되는 거래
 -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금속(빌렛, 슬라브 형태의 반제품 철강 등)
 - 철강 등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나 완제품 형태(자동차부품, 철제의자 등)이면 해당되지 않음
 - 단, 철강과 알루미늄에 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종류든 상관없이 원재료 또는 반가공 금속이면 범위에 포함됨

- 계약일 또는 선적일에 관계없이 2013년 7월 1일부터 제재대상 거래는 대금결제가 불가함
 - 대금은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받고, 선적은 7월 1일 이후에 할 경우에도 제재대상 이므로 유의해야 함

- 이란 내 다수의 기업이 제재 대상자에 등재되어 있음에 주의해야 함
 - 금지대상 거래상대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거래전에 필수로 이란 상대방이 제재 대상자인지를 확인 요건이 개정됨
 - 거래상대방의 확인절차를 완료해야 비금지 확인서 신청이 가능함

27) <부록 XI> 참조

(3) 2014년 1월 20일 일시적 제재 완화

- P5+1 이란 간 핵협상 타결(2013년11월24일) 이후 2014년 1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6개월간 일시적으로 이란 제재조치를 완화 하였음²⁸⁾
 - 한시적인 조치이나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과 이란-주요 6개국 '포괄적합의'에 따라 완전 해체가 결정됨
 -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던 이란 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부품 수출과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6개월간 일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음
 - 금, 은 등 귀금속 수출입 거래도 해당되며 철강 및 반제품 등은 해당이 안되니 유의할 것
 - 미국과 함께 유럽연합도 이란산 석유, 원유 수출에 대해 운송보험 제공 금지, 귀금속과 석유화학제품 교역 중단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함
 - 시행기간 중에 계약 체결, 이행 및 대금 결제까지 맞춰야 하니 유의해야 함²⁹⁾

(4) 2014년 7월 20일 제재 완화 연장

- 2014년 7월 20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은 이란과의 핵협상 시한 연장을 발표하면서 4개월간 유효한 한시적 유예를 연장하기로함
- 제재 거래 날짜와 관련하여 거래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재 완화품목의 경우 시행기간내에 계약체결, 계약이행, 선적 및 운송완료, 대금결제까지 완료를 해야 함
 - 2014년 1월 20일부터 7월 20일 사이의 제재완화 품목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7월 20일까지이므로 7월 21일 이후 선적 및 대금결제를 위해 신규신청을 해야 함
 - 2013년 7월 1일과 2014년 1월 19일 사이의 거래는 2014년 7월 21일과 11월 24일 사이에 진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2013년 7월 1일 이전 거래는 2014년 7월 21일과 11월 24일 사이에 진행이 가능함

28)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29) 전략물자관리원

- 자동차 수출, 석유 화학제품 수입, 귀금속 거래와 관련하여 유예 적용기한을 연장함
 - 귀금속의 경우 원화결제시스템 이용이 금지됨

- 석유화학 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 받는 행위만이 제재가 완화됨
 -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출은 여전히 제재대상임

- 이란 내 자동차 개발, 생산과 관련 품목 수출입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음
 - 자동차 AS용의 물품인 경우 비금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자동차 제조용에만 전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최종용도확약증명서는 불필요함

- 특정물품(철강, 알루미늄)은 가이드라인 제5조 또는 제10조 제1항의 제재 분야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수출가능 하도록 개정됨
 - 비금지확인서 신청 시 최종용도확약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원재로 혹은 반제품의 경우 가공 후 사용용도를 기입해야 함
 - 특정물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핵협상 연장시한의 구속없이 거래 가능함
 - 자동차 제조용 특정물품의 유효기간은 일시적 유예기간인 2014년 11월 24일까지임

- 기타 제재 분야 완화로 항공, 원유, 교육, 인도적 거래가 있음
 - 인도적 물품의 허용기한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대금결제 및 선적이 이 기한까지 완료되어야 함
 - 인도적 물품의 중계무역의 경우 식료품, 농산물, 직물, 의약품 및 의료장비가 있음
 - 인도적 물품의 이란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거나 이란에 대해 수출실적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가 가능함

(5) 2014년 11월 24일 제재 완화 연장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은 2014년 11월 24일 이란과의 핵협상 시한 연장을

발표함

- 2015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한시적 유예기간을 연장함
- 제재 완화 기간동안의 거래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 물품 인도, 대금결제까지 모두 종결시켜야 함
 - 물품 도착을 위해서 2015년 5월 말 이후 선적날짜를 필수로 확인해야 함
 - 2014년 1월 20일과 11월 25일 사이에 계약, 선적한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거래절차가 완료되면 대금결제가 가능함
- 기본적인 제재 완화 품목은 2014년 7월 20일의 제재유예와 같으며 2014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완화 품목과 금지 품목은 <표 Ⅲ-1>을 참고
 - 자동차 수출, 석유 화학제품 수입, 귀금속 거래가 동일하게 연장함
 -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리스트는 <부록 Ⅵ>를 참고할 것
 - 귀금속의 경우 원화결제시스템 이용이 금지되고 있음

<표 Ⅲ-1> 제재 조치 현황

구분	제재대상거래	제재완화대상
전략물자 등	전략물자, 상황허가 품목거래	×
석유 및 정유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지원	×
	이란 내 정유제품 생산·수입지원	×
	對이란 정유제품 수출	×
석유화학	이란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지원	×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
일반산업	이란의 조선, 해운, 항만분야 거래	×
	이란의 자동차분야 거래	○
귀금속 및 원자재	귀금속 거래	○(원화결제불가)
	제재분야 관련 특정물질 거래	×
제재대상자	SDN 등재자 등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 기존 제재 분야인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지원, 이란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지원, 이란의 조선, 해운, 항만 분야 거래, 전략물자, 상황허가 품목거래는 여전히 제재를 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함
 - 제재 분야와 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불이익이 있으며, 금융기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인도적 물품의 중계 무역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허용했음
 - 인도적 물품은 식료품, 농산물, 직물, 의약품, 의료장비를 의미함
 - 식료품 및 농산물의 경우에 〈부록 XIII〉의 HS 4자리 기준 238개 품목³⁰⁾을 참조하면 됨
 - 의약품의 경우 사람 및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완화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확인된 서류를 필요로 함
 - 신청자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도적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거나 이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전문 무역상사이어야 함
 - 중계무역일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을 외국환으로 거래할 경우 결제 은행이 동일해야 하며 해외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불을 금지함

- 인도적 물품의 무역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출신고필증 1부(인도적 물품 수출실적 있었던 경우)
 - 전문무역상사인증서 1부(산업부와 무역협회에서 발급)
 - 수출계약서
 -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정부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1부
 - G2G 또는 G2B의 경우 당사자가 정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30) 〈부록 XIII〉 참조

〈표 Ⅲ-2〉 기타 분야 제재 완화

분야	내용
항공	이란 국적 항공사 안전관련 수리 및 검사를 위한 허가발급
원유	이란산 원유 구매 현 수준 유지 및 판매대금 28억달러 이란으로 분할송금허용
교육	이란 유학생들의 학비목적으로 이란 정부의 교육보조금을 제3국 내 교육기관에 송금허용
인도적 거래	식품, 의약품 등의 인도적 거래에 대해 제재 예외를 유지함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 이란 제재 완화 기간의 연장과 품목은 이란과의 핵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의 공지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
 - 제재 완화 기간에도 제재를 다시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2) 비금지 확인서 및 원화결재

- 기업 및 개인이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려면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³¹⁾
 - 금지품목, 행위나 제재대상자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해줌
 - 국제사회의 이란 일시적 제재 유예에 따라 자동차 분야 거래, 석유화학제품 수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줌
 -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은 해외건설협회로 접수해야 함
 - 확인서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첨부서류로는 품목의 기술특성과 용도 등을 표시하는 서류임
 - 카달로그, 매뉴얼, 기술 사양서 등
- 비금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함
 - 신청자의 정보
 - 거래상대방 상호 및 기타명칭, 전화번호, 주소

31) 전략물자관리원

- 제재대상자 해당여부
 - 유효기간
 - 금지품목 해당여부
 - 계약년월일
 - 결제(예상)년월일
 - 거래품목(기술명 및 기술내용)
- 비금지 확인서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거래양식이 변경됨
- 동일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의 결제의 편리성을 위해 '총거래가액'을 삭제함
 - 양식의 변경사항은 핵협상과 관련된 것은 아님
 - 비금지 확인서에 물품 단가(Unit Price)를 입력해야 하며 이는 거래의 진위성 판단을 위한 것임
 - 물품의 HS번호가 동일하나 모델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입해야 함
 - 물품단가는 견적서나 계약서를 바탕으로 기입하며 서류가 없을 시 시장거래가액을 기입해도 됨
 - 샘플이나 AS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시장 거래가액을 기입하며 운송비를 넣을 필요는 없음
 - 물품 단가는 확인서에 직접 출력되지 않으며 단가가 너무 높을 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신규로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로 동일거래가 이루어질 때 한국은행이 허가 및 대금 결제 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개정된 비금지 확인서에서 동일 거래란 기존의 계약에서 계약상대방과 품목이 일치되어야 함을 말함
- 계약자, 기본정보 변경, 계약자외의 거래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함
 - 다수 거래상대방중에서 일부가 제외될 시에는 기존의 확인서가 가능함

- 비금지 확인서를 전략물자원으로부터 받은 후 거래상대방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금결제가 불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수시로 제재대상자를 확인해야 함

- 2014년 11월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란 비금지 확인서를 위조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 가이드 라인 16조에 의하여 비금지 확인서 효력 정지, 취소가 됨
 - 적발될 경우 비금지 확인서 발급이 1년동안 제한됨

- 2010년 7월에 발효된 미국의 추가제재법안(CISADA)으로, 우리나라와 이란 정부의 협력 하에 원화를 활용한 대체 결제제도를 마련함
 - 강화된 대이란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수출대금 결제가 어려워졌음
 -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임

- 현재 이란 수출대금 결제는 원화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화 T/T 송금, 원화 L/C 개설이 가능함
 - 이란 내 수입업자는 이란 제재 영향으로 이란 내 은행을 통해 외환을 직접 송금할 수 없음
 - 이란 진출 지원을 위해 2014년 3월 17일부터 서비스 교역거래에 대해 원화 결제 허용범위가 확대됨

- 이란 원화결제 허용 절차는 ① 전략물자관리원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발급 → ② 한국은행 신고·허가 절차 ③ 우리·기업은행에서의 원화결제 처리의 단계를 거치게 됨
 - 이란관련자와의 지급 등 허가 문의는 한국은행 외환심사팀³²⁾으로 연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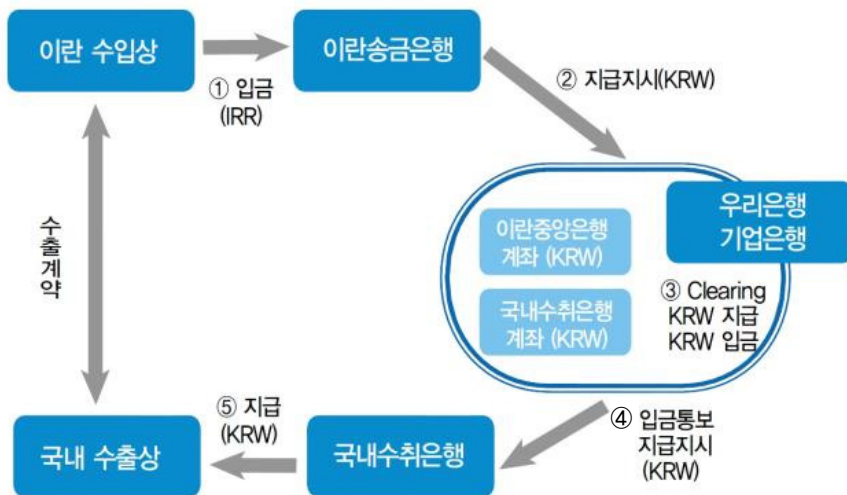
- 원화 결제 기업자격으로는 이란으로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증빙

32) 전화번호: 02-759-5300, 온라인 문의는 www.bok.or.kr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타국이나 국내에서 해당 우리나라-이란 용역거래와 동일한 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은 수출입확인서(한국무역협회),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외국법인은 제외됨
 - 이란과의 교역 시 원화표시 계약서 및 원화표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원칙이며 모든 결제가 원화로 이루어짐
-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우리나라의 두 은행(우리은행, IBK)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계좌에 적립해 놓은 후, 동 자금으로 대이란 수출품목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임
- 원화결제가 가능한 이란 8개 시중은행은 Pasargad, Maskan, Saman, Saramye, Eghtesad Novin, Keshavarzi, Karafarin, Parsian Bank등임
- 이란의 10개 은행이 원화결제 가능은행으로 지정, 운용됐으나, 2개 은행(Bank of Industry and Mine과 Tejarat Bank)이 차례로 제재대상은행에 포함됨

[그림 Ⅲ-2] 원화결제 프로세스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 이란 수입업자가 원화 L/C나 T/T 거래를 위해, 이란에서 원화 결제 취급하는 8개 은행 중 한 곳에 계약대금에 해당하는 이란 현지화(리알화) 금액(정확히는 계약금액의 약 130%)을 입금하고 서류를 제출함
- 2014년 이중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업자가 원화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제품 수입 시 정부 고시환율을 적용을 받고 있음
 - 2013년 6월, 삼중환율제를 없애고 정부환율과 시장환율로 이중환율제를 도입함
- 은행은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금액을 이란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외환거래소에 제출함
 - 외환거래소는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해당 거래를 검토한 후 신청한 이란은행에 원화를 배정해 줌
- 이란은행이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L/C를 개설하여 통지하거나, 대금을 T/T로 송금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은행(우리은행 또는 IBK)이 이를 받아서 수출자에게 통보함
- 원화결제에서는 사전에 수입업자가 T/T로 송금을 하더라도 수출자가 제품을 선적하여 선적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우리은행 또는 IBK에 입금된 수출대금을 찾아올 수가 없음
 - 이란 수입업자도 선금으로 납부한 계약금액의 130%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입금한 30% 부분은 수입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으로부터 받아올 수 없음
 - 당초 신청한 수입품목에 대한 서류와 통관된 제품이 일치한다는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은행에 자금이 묶여있게 됨
- 이란 수출관련 운송선박별(컨테이너선과 非컨테이너선) 대금결제 요건이 2014년 7월 25일 추가됨³³⁾
 - 컨테이너선을 이용 할 때 컨테이너 번호를 통한 화물이동경로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House B/L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적항은 우리나라이며 도착항은 이란으로 기재된 해운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이 제출되는 경우만 가능함

33) 전략물자관리원

- 해운선사는 운항경로 추적(tracking)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사로써, 은행과 사전협
의가 완료된 경우만 가능
 - 도착지 항만은 제재대상자가 운영하지 않는 항만이어야 함
- 벌크선 등 非컨테이너선 이용 시
- 공인 기관이 발행한 선적확인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제출
 - House B/L 및 용선부 B/L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적항은 우리나라이고 도착항은 이
란으로 기재된 해운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이 제출되는 경우만 가능
 - 해운선사는 운항경로 추적(tracking)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사로써, 은행과 사전협
의가 완료된 경우만 가능
 -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 출발해야 하며, 우리나라-이란 간 운송과정에서 제3
국 기항이 불가하고, 선박기국 LRIT(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한 선박이동
경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선사 또는 은행과 사전협의 완료 후 6
개월 이상 운항실적을 보유한 선사는 본 항목 적용 면제 가능
 - 도착지 항만은 제재대상자가 운영하지 않는 항구/터미널이어야 함
- 제재대상자 운영 항구 및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항공 운송에 대한 제
재는 없으나, 우려 거래자로 지정된 항공사는 이용이 불가함
- Bandar Abbas Shahid Rajaeه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일부 벌크 터미널
 - Bandar Iman Khomeini항 내 Grain 터미널 및 컨테이너 터미널
 - Bandar Anzali항
 - Khorramshahr항
 - Assaluyeh항
 - Aprin항
 - Amir항
- 원화결제 은행과 협의를 거쳐 2014년 이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정 선사 현황

이며 자세한 연락처는 〈부록 VIII〉을 참조

- 현대상선, 한진해운, 동진선박(Emirates Shipping),에버그린, 고려해운 컨테이너
- 마리소, 킹스오션 Shipping, SC 글로벌 벌크

3) 한국은행 신고허가제도

- 이란관련 지급 및 영수에 관한 한국은행 신고허가제도가 있음³⁴⁾
 - 1만유로 이하는 신고불요
 - 1만~4만유로는 한국은행 신고대상
 - 4만유로 이상은 한국은행 허가사항
 - 건당 1만유로 이상의 12개월 합산 4만유로 이상인 건도 허가대상에 포함

- 신고 대상 기준은 거래품목 또는 행위가 ‘금지대상 대이란 교역·투자 품목 및 해외건설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접수 가능함
 - 허가사항 기준은 이란의 핵확산 민간활동 또는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사함

- 신청방법은 한국은행 본부 외환심사팀 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 업무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직원과 면담을 해야 함
 - 건설공사 및 플랜트수출거래,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는 본부만 해당됨

-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음
 - 신청서
 - 사유서
 -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
 - 채권 채무 증빙서류
 -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한 확인서

34) 전략물자관리원

- 신청업체의 금지품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
- 자본거래 시 자원 등에 대한 확인서
- 인감증명서
- 서약서
-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임

나. 수입 통관 절차

1) 이란 수입 통관

- 이란의 통관 절차는 상품도착 → 수입물품 보세창고 하역 → 통관수속 → 물품 검사 및 선적서류를 확인 → 샘플 테스트 및 가격체크 → 관세 지불 → 통관확인서 발급(Green paper를 받음)임³⁵⁾
 -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입항계(notice of arrival)를 전달하고 컨테이너는 세관에 들어가고 세관에 의해 영수증(receipt)이 발행됨
 - 수입업자는 입항계를 가지고 세관 방문 후 컨테이너의 영수증(receipt)을 요구함
- 통관 수속과 관련된 서류 세관에 제출함
 - Registered P/I(견적송장)
 - Copy of Commercial ID Card 또는 Company Registration(회사등록증)
 - Copy of L/C 또는 T/T remittance(신용장 또는 송금영수증)
 - Commercial Invoice(상업 송장)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Country of origin certificate(원산지 증명서)
 - Bill of landing(선하증권)
 - Inspection certificate(검사 증명서)
 - Standard certificate(표준 증명서)

35)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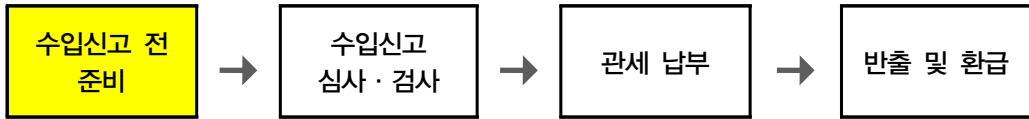
- 세관 검사관이 수입업자나 법적 대리인과 동행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검사관이 물품과 선적서류를 확인한 후 세관 소속의 관련 부서에 보고함
 - 이란 수입업자 또한 법적 대리인이 검사관의 보고에 따라 세관에 비용을 지불 (Green paper를 받음)함
 - 세관 지불 시 관세, 터미널취급수수료(THC), 창고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함

IV.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표 IV-1) 이란 통관 절차별 유의 사항

단계	유의 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과 교역하려면 전략물자관리원이 발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 ○ 이란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이란에이전트를 선임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능력있는 에이전트를 찾는 게 관건임 ○ 이란코드를 받은 제품만이 이란에 유통될 수 있으며, 수입신용장에 검사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이란은 WTO 미가입국임 ○ L/C 개설 이전에 수입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4년 일시적으로 이란 제재조치 완화하여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귀금속의 수출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함
2. 수입 신고 및 세관 심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되니 확인 할 것 ○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 걸림 ○ 수입 통관 중량 측정 시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는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중량을 측정 하고 있으니 유의할 것
3. 관세 납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분류방식을 사용하며 코드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서 관세율 확인이 어려우며 KOTRA 테헤란 무역관 홈페이지 Q&A를 통해 HS 코드와 함께 문의하면 관세율을 알아 볼 수 있음 ○ 전기전자 제품 생산을 위해 CKD형태로 부품을 수입 할 경우,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하여 완제품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것
4. 물품 반출 및 환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통관 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반환은 출국시점이 아니라 출국 후 약 6개월 후에나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예치금을 아예 포기하기도 함 ○ 관세가 예상보다 많게 추징되었을 경우 관세청 산하 수입부서(Import Department)나 감찰부서(Inspection Department)에 문의할 수 있음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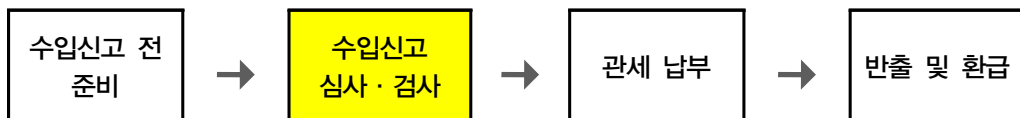
- 이란에 수입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절차는 수출자→에이전트(또는 도매상)→소매상→소비자 순으로 진행이 됨
 - 이란에서 A/S 제공 등을 이유로 현지 에이전트를 선임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품 수입 시 각종 승인 및 등록 업무를 에이전트가 직접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란에 첫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에이전트와 계약을 할 경우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하며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1년동안 문제가 생겨도 다른 업체로 교체하기가 어려움
 - 독점 계약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몇몇 수입업체의 경우 독점 계약을 요구하니 처음 진출하는 업체는 유의해야 함
 - 다년간의 거래를 통해 상대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본 후 독점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함
 - 독점대리점 계약을 맺지 않아도 이란 수입업자는 이란에 등록된 브랜드에 대한 독점을 보유하게 되어 있음
 - 먼저 거래를 시작한 수입업자가 A라는 브랜드를 등록하면, 다른 수입업자는 A브랜드를 사용할수 없고 같은 제품을 B라는 브랜드로 등록하면 판매가능함
- 이란 국적선 우대제도는 정부(국영기업 포함)화물, 민간화물간 구별 없이 적용되며 육상, 항공화물의 경우에도 적용기준 중량은 상이하나 동일한 제도가 있음³⁶⁾
 - 국적선 우대제도의 적용을 피하고자 신용장 개설, 선적 서류작성 등에 있어 서류상

36)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4

으로 화물을 500mt 미만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편법을 이용함

- 국적선 우대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영선사의 수송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이란의 전체 해상 물동량 중 대다수가 외국선사에 의해 운송되고 있는 실정임
- 이란 국영선사(IRISL)는 노선이 비정기적이어서 직접적으로 선적하는 것이 어렵고 미리 컨테이너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로 인한 수출기업의 공장화물적체, 적기 생산 애로 등의 요인으로 작용함
- 수입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전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검사가 이란 수출 시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신용장 개설 전 수입업자에게 검사 면제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선적 전 검사 기관은 우리나라에 사무소가 없어 일본 소재 IEI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수입업자에게 검사기관 변경을 미리 요청하는 것을 권함
- 할랄 식품의 경우 인증 없이는 진입이 어려우니 미리 관련된 인증을 받아서 수출을 하도록 해야 함

2. 수입 신고 및 세관의 심사 단계



- 수입품 검사는 견적송장(P/I)체크,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장 등을 체크하며 이루어짐³⁷⁾
 - 견적송장(P/I)상의 금액과 상업송장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도장이 없다면 통관이 종료되었다고 여기지 않음

- 수입 통관 시 실제 중량 측정(Actual Weight)과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송장(invoice)에 나와있는 중량과 비교하여 측정함³⁸⁾
 - 철강, 종이, 파이프 등의 무게를 측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치 않고 있음
 -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중량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실제 중량을 사용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함

- 해외에서 이란으로 도착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량이어도 통관 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함
 -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편임
 - EMS를 통해 이란으로 샘플을 보낼시에도 샘플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이란 수입업자에게 발송번호를 미리 알려주어 조치를 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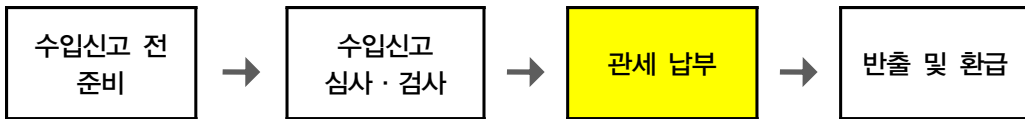
- 공항 입국 시 소지하는 샘플도 공항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샘플 정식 통관 시 절차가 복잡한 편이며 세관원이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37)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38)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 라벨링의 경우 의약품, 농식품,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페르시아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포장에는 kg, MT를 이용하여 물품의 무게 정보를 기입해야 함

3. 관세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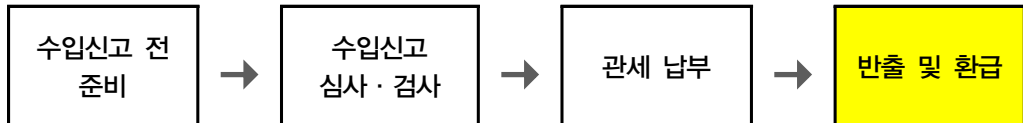


- 현재는 상업이윤세가 기본관세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과거에는 기본 관세(Custom Duty) 및 상업이윤세(Commercial Benefit Tax; CBT), 은행세(Banking Charge, 5%)로 구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통합됨
- 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보험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CIF가 아닌 CFR을 이용하고 있으니 유의할 것
 - CIF로 거래를 하여 거래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함
- 2014년 12월 2일 기준 달러화 대비 정부 환율은 26,845리알이며 시장환율은 3만 3,000리알³⁹⁾
 - 공식환율 확인 사이트: http://cbi.ir/ExRates/rates_en.aspx
 - 시장 환율 확인 사이트: <http://mirdamadexchange.com/>
- HS 코드는 8자리이며 이란에는 이란 세관 홈페이지 내에 관세율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으나 2003년 이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실제 관세율과 차이가 있음
 - KOTRA 테헤란 무역관 홈페이지 Q&A를 통해 HS 코드와 함께 문의하면 관세율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음

39) 이란 무역진흥기관(TPO)

- 전기전자 제품 생산을 위해 CKD 형태로 부품을 수입 할 경우 완제품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부품을 써야 완제품으로 간주가 안되니 유의할 것
-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업자는 CFR⁴⁰⁾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음⁴¹⁾
- 이란은 대부분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 종교의 공휴일은 대부분 음력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달력에 나와 있는 휴일과 실제 휴일과는 약간씩 변동이 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함

4. 물품 반출 및 환급 단계



- 물품 통관 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경우 반환을 원하면 출국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약 6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예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⁴²⁾
-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환급의 경우 관세를 우선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환급이 가능함⁴³⁾

40) 운임포함가격조건,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임

41)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42)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43) 외교부,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2013

- 관세면제 대상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의논하여 결정을 하며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

- 관세가 예상보다 많게 추징되었을 때에는 관세청 산하 수입부서⁴⁴⁾(Import Department)나 감찰부서(Inspection Department)⁴⁵⁾에 연락할 수 있음

44) Import Department : +98-21-8873-6090

45) Inspection Department :+98-21-8299-2606

참고문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2014, www.kati.net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이란 음료 미니시장조사 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란, www.kotra.or.kr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국가별 정보, www.korcham.net

세계은행, www.doingbusiness.org

외교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이란 관세청, www.irica.gov.ir

이란 무역진흥기관(TPO), www.tpo.ir

이란 상공회의소, www.iran-investment.org

이란 투자청, www.oietai.ir

전략물자관리원, www.kosti.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이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CIA country profile IRAN 2014, www.cia.gov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4」(2014)

〈부록 I〉 비즈니스 팁

- 이란인은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나타내며 주변 아랍국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함
 - 이란인의 기질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며 배짱이 두둑한 면이 있는 반면, 엄격한 종교율법에 따른 제약도 많음
 - 종교에 기초한 상황은 신이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며, 종교 율법만이 유일한 법임

- 현지 공무원에 대한 뇌물성 선물은 엄격히 금지되나, 감사 표시의 소액 선물은 상호 간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란 관공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낮고, 일 처리가 더딘 편임
 - 처리과정이 복잡하므로 관공서에 관련된 일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요함

-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국가로 상담 시 종교 및 내정에 대한 비판은 삼가야 함
 - 외국인(여성)의 경우에도 히잡(스카프)을 쓰는 등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함

- 넥타이를 매는 것은 현지 관습에 어긋남
 - 법원이나 관공서 출입 외국인에게 넥타이를 풀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 및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1개월 체류 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입국 후 1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함
 -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현지 바이어가 이란 외무성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송부함

초청장 첨부가 요구됨

- 이란 입국의 관문인 Imam Khomeini Airport에서 72시간(또는 15일)의 도착비자(arrival visa)를 발급해 주기도 함
 - 최근 도착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으며, 이란 외무성의 소정 양식에 의거한 (Reference Number를 표기한) 바이어의 초청장 소지를 요구하며 초청장 미소지 시 종종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입국을 불허하기도 함
 -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의 이란 입국비자 발급은 3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니 주의 할 것

-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
 - 이스라엘 입국 시 별지에 스탬프를 받으면 됨

- 전화 및 서신으로 일반적인 정보 교류 후 비즈니스상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직접 대면 상담으로 결정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업체에 오더 하기보다는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유지 하는 성향이 강함
 - 상담 시에도 개인적인 인사나 일반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어 우리나라 사람의 시각에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음

- 거래 협상이나 계약 시에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즉, 사회, 기업, 가족 등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협상에 임할 때는 개인적인 면보다는 공동의 이익에 대해 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 부드러운 상황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식사를 같이하는 것도 좋으며 이란인은 외국 음식보다는 현지식당(양고기, 케밥 등)을 더 좋아함

- 최초 상담에서 가격 인하 및 에이전트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 언급으로 거래 관계가 성립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단지 상담술에 불과함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는 진출이 여의치 않은 점을 이용,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최초 수입 상담 시부터 가격 인하 조건을 서슴없이 내세우는 경향이 강함

- 가격 인하 조건 수용 시 2, 3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함
 - 최초 상담 시 가격 인하 조건을 수용하기보다는 품질 우수성 등을 내세워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

- 오퍼를 내더라도 10개 이상의 업체 가격을 비교하며 심지어는 견적송장(P/I)을 보여 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또한 견적송장(P/I) 발행 후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던 업체에서 1년 후에 L/C 개설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처 관리가 필요함
 - 이란 바이어들이 취득한 I/L(Import License)의 유효 기간이 특정거래를 제외하고는 주로 3월인 회계연도 내에 만료되기 때문에 1~3월에 연락이 오면 거래 가능성이 높음

- 이란 비즈니스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례 부딪히는 문제가 Under Value 및 Over Value 문제임

-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20~30%의 Over Value를 선호함
 - 이 경우는 신용장을 Over Value 금액으로 개설한 뒤, 국내 공급업체가 대금 결제 후 Over Value 분의 금액을 해당 바이어에게 되돌려 줘야 함
 - Refund는 주로 바이어의 3국 계좌 입금 또는 Cash 형태로 진행됨
 - Over Value 거래를 진행하는 국내 업체들의 일반적 대응 조건은 다음과 같음
 - Over Value 금액 송금을 위한 은행수수료의 바이어 부담함
 - Over Value 금액을 기준으로 한 6~10%의 국내 법인세에 대한 바이어 부담함
 - 국내 법인세가 25% 대에 달하나, 상호 거래 파트너임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를 바이어에게 전가함

-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려 있다는 인살라 관습 때문에 매사에 느긋해 대부분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 않으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음
- 남녀구별이 확실해 버스도 앞쪽 반은 남자, 나머지 반은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항 출입 시에도 남녀 출입문이 따로 있음
- 2012년 7월 말부터 이란인 개인은 “의무 하지” 기간 중 Mecca와 Media 성지순례 시에만 1인당 200달러까지 환전(정부환율)을 해주는 것 이외에는 은행에서 외환을 환전을 해주지 않고 있음
- 이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찰이나 여행자 수표를 지참해야 함
 - 국외에서 유입된 외환은 자유로이 반출이 가능하나 입국 시 공항 입국 심사대 (Passport Control) 이전에 위치한 은행에서 반입 금액 신고를 전제로 함
- 환전은 원칙적으로 은행 및 공식환전소 이용이 의무적이며, 환전 시 여권을 제시해야 함
 - 사용하고 남은 현지화는 공항에서 재환전 할 수 있으나 최초로 환전했을 때의 영수증이 필요함
 - 암시장 환전도 가능하나 환차손을 감수해야 함
- 이란 소비자는 약 1% 미만의 부유층과 5% 내외의 중산층, 94%의 극빈층으로 구분됨
 - 부유층은 해외 생활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 선진국의 고가명품을 주로 사용하며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품 품질보다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경향을 보임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주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irn.mofa.go.kr
이메일	emb-ir@mofa.go.kr
대사관	
주소	No. 2, West Daneshvar St, Sheikhbahai Ave, Vanak Sq, Tehran, Iran (11155-3581)
전화번호	+98-21-8805-4900~4
팩스번호	+98-21-8805-4899
영사부	
전화번호	+98-21-8805-4900~4
팩스번호	+98-21-8806-5302

■ KOTRA 무역관	
웹페이지	www.kotra.or.kr - 해외무역관 - 테헤란 무역관
주소	NO.18, 12th Alley, Velenjak, P.O Box 19615-391, Tehran, Iran
전화번호	98-21-2217-4005~7
팩스번호	98-21-2241-2518

■ 이란 무역진흥기관(TPO)	
웹페이지	www.eng.tpo.ir
전화번호	+98-21-2266-4063
팩스번호	+98-21-2266-4069

■ 이란 관세청	
웹페이지	www.irica.gov.ir
전화번호	Customs Admin,HQ Vali-e-Asr Ave Tehran Iran
이메일	info@irica.org

■ 이란 보건부	
웹페이지	www.behdasht.gov.ir
전화번호	+98-21-6640-6663

■ 이란 상공회의소	
웹페이지	www.iran-investment.org
주소	North Building of Irani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and mines, No. 254, Taleghani Ave. Tehran 15814 Iran
전화번호	+98-21-8868-5036
팩스번호	+98-21-8869-5037
이메일	ifjia@iran-investment.org

■ 이란 소비자보호기관	
웹페이지	www.cppo.ir
전화번호	+98-21-2205-9371
팩스번호	+98-21-2201-7890
이메일	Info@Cppo.ir

■ 이란 상무부	
웹페이지	www.en.iccima.ir
주소	175, Taleghani Ave. Tehran/Iran
전화번호	+98-21-8882-5111

■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웹페이지	www.bok.or.kr
전화번호	02-759-5300

■ 이란 외무부	
웹페이지	mfa.gov.ir/
주소	Iran - Tehran - Imam - Imam Khomeini Street - Ministry of Foreign Affair
전화번호	+98-61-151-009-821
이메일	Info@Mfa.gov.ir

■ 이란 투자 · 경제 및 기술지원기관	
웹페이지	www.investiniran.ir
전화번호	+98-21-3990-3167
팩스번호	+98-21-3396-7761
이메일	s.shams@investiniran.ir

■ 한국검수검정협회	
웹페이지	cafe.daum.net/kts6934/EpeR/4?
주소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1호 (110-300)
전화번호	02-737-6934
이메일	kts6934@hanmail.net

〈부록 Ⅲ〉 관세법

EXPORT-IMPORT REGULATIONS ACT

Article 1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and the delivery of related services to all exporters and importers and also to thos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aw requires their naming, shall be governed by this law, and all law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t, are hereby annulled.

Article 2

Exportable and importable good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1. Permissible goods: with the observance of the relevant criteria, the exportation or importation of these goods shall not require a license.
2. Conditional goods: the exportation or importation of these goods is possible by obtaining a license.
3. Prohibited goods: the exportation or importation of these goods (purchase, sale or consumption) is forbidden under the sacred Islamic Shari'a and or by law.

Note 1

The Government may, with the observance of the relevant laws and depending on the prevailing exigencies and circumstances, prohibit the exportation or importation of certain goods.

Note 2

The types and specifications of goods falling under any one of the aforesaid three

categories shall be set forth by an ordinance to be drawn up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

Article 3

Engaging in the business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for commercial purposes, requires a commercial card which shall be issued by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and approv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Note 1

The criterion of determining the commercial nature of goods, as well as the manner of issuing, extending and cancellation of the commercial card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n ordinance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Note 2

Any disput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applicant of a commercial card and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shall be referred to the Ministry of Commerce for consideration and final decision.

Note 3

Co-operatives of frontier zone inhabitants; Iranian mariners; hawkers; and workers residing abroad and holding employment records issued by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shall be exempted from obtaining commercial card.

Article 4

Prior to the end of each year, the Minist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ective organizations and with the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shall prepare the general modifications which are to be made to the executive ordinance of this law and to the schedules annexed to the export-import regulations, for the subsequent year as well as specific modifications made in the course of the current year, while incorporating therein the acquired rights, and shall promulgate them for the public knowledge, after the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te 1

All circular letters and directives to the relevant executing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shall be communicated exclusively through the Ministry of Commerce.

Article 5

All productive ministries are required to forward to the Ministry of Commerce, not later than the 4th of February (15th of Bahman) of each year, their proposals for the following year concerning the export and import conditions in respect of goods similar to those produced domestically,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internal requirements and exigencies of the country.

Notel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may send in to the Ministry of Commerce, not later than the 4th of February (15th of Bahman) of each year, their proposals in respect of the relevant items,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internal requirements and exigencies of the country.

Article 6

Iranian means of transport shall have priority to transport all goods imported into the country. However, the directive pertaining to the use of foreign means of transport whether sea, air, road and rail-way carriers shall be drawn up by the High Council for the Co-ordination of National Transpor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ordinance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Article 7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allocate special premises for the provisional storage of goods needed to repair and equip the country's commercial marine and aircraft fleet.

Note 1

The transit of goods falling under this article from one port of entry to another shall be permissible, with the observance of transit regulations.

Note 2

Such goods shall be exempted from customs duties, commercial benefit tax and any other charges.

Note 3

Those parts of requirements of the aforesaid fleet which can be supplied by domestic sources within the country, shall be exempted from any obligation and export licensing.

Article 8

Importers of various goods, whether governmental or not shall refer exclusively to the Ministry of Commerce, for licensing their imports and registration of their orders.

Note 1

The import license shall serve also as a clearance permit , and no separate Permit shall be required.

Note 2

Households inhabiting in the frontier zones or their co-operatives, mariners, hawkers and vessel crews importing goods for their personal consump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9

The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Iran Customs Administration are required to send to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 statistical statements concerning the letters of credit which have been opened and goods which have been cleared.

Article 10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specify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executive ordinance concerning border trade exchanges:

1. Localities or the depth of border tracts, residents of which are authorized to engage in border trade business.
2. Types and quantities of goods which may be exported or imported by households residing in border regions or their co-operatives, authorized Iranian workers employed abroad, hawkers residing in frontier zones, mariners and crew members of vessels commuting between the shore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other countries.
3. The requirements to be met by the aforesaid persons or groups.
4. Conditions for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and fulfillment of obligations.

Note 1

Goods imported by households residing in frontier zones or their co-operatives, and by vessel crew members for their own personal consumption shall be exempted from 30 per cent up to a maximum of 100 per cent of customs duties and commercial benefit tax in the case of public provisions, and up to a maximum of 50 per cent of customs duties and commercial benefit tax in the case of home appliances, by the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ries.

Note 2

Iranian workers and nationals permissibly employed abroad may import industrial machinery, tools and primary materials needed in the country, within the quantitative thresholds, and taking advantage of such percentage exemptions from commercial benefit tax as may be jointly set by the Ministry of Commerce,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and the relevant industrial ministry, and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Article 11

The government is authorized to set up border marketplace in any of the frontier zones as may be deemed beneficial, having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priorities as local potentiality, employment generation requirements and the expansion of commercial relation with the respective neighbouring country.

Article 12

The pre-exportation entry of materials and goods as temporary admission, to be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finishing, processing and packaging of export goods are exempted from all import duties, except those designated as expenses or fees, provided that valid security or promisory note be deposited with the Customs Administration.

Note 1

If the goods which are made of the imported materials and goods under this Article, are not export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of tim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to prosecute the importer, in order to recover the government's rights.

Note 2

Goods subject to this Article are exempted from licenses set forth in the schedules annexed to the Export- Import Regulations.

Note 3

The importer shall not be necessarily bound to export pro se, rather the relevant export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be sufficient to relieve the obligation.

Article 13

All exported goods (except crude oil and downstream products thereof which are subject to special regulations) shall be exempted from any obligation or foreign exchange repatriation bond.

Article 14

The sum “difference” collected by the Organization for Consumer and Producer Protection and all funds, except those designated as expenditures and fees, collect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 respect of any foreign goods, materials, components and parts incorporated in the manufacture, finishing, processing and packaging of export goods, shall be refunded to the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 directive set forth in the ordinance.

Note 1

If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exporter and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a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the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the relevant ministr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Iran and the Export Promotion Centre, for final decision.

Note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to open a [treasury] account in the names of the Organization for Consumer and Producer Protection and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Iran, from which to finance payments herein provided for. The Ministry shall refund the payments herein referred to, against presentation, by the exporter, of export certificate or the receipt issued by the Organization for Consumer and Producer Protection,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 aforesaid authorities.

Article 15 *

In order to simplify the calculation of collectable funds in respect of any imported goods, the Ministries of Commerce and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having regard to the protection of domestic production, are bound to consolidate into a unified heading called “Commercial Benefit”, such collectable levies as commercial benefit tax; the “difference” payable to the organization for Consumer and Producer Protection; order registration fee; monopoly right dues; municipal dues; local municipal dues (Co-operation); Red Crescent dues; asphalt dues; airport taxes; port charges; health dues; etc., except sums collectable under customs duties, charges and fees, in respect of each

tariff line, at reasonable rates, and to communicate it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for collection.

Article 16

The manner in which import prices are to be examined for order registration purpose, shall be laid down in an executive ordinance to be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Article 17

In addition to personal effects, an incoming passenger may bring in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and commercial benefit tax up to such ceiling as may be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clearance of goods falling under this Article shall be permissible, provided that they are of non-commercial nature.

Note 1

The list of goods accompanying incoming passengers shall be prepared and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Note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cable also to passengers arriving in free-trade zones.

Note 3

In addition to personal effects, an outgoing passenger (whether Iranian or foreign national) may take domestic manufactures and products without any restric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y are not intended for commercial purposes. Outgoing passengers may also take foreign goods up to the ad valorem threshold specified under this Article.

Article 18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by provincial and local authorities, of any dues in respect of any export goods and items are prohibited and the perpetrators shall be pursued for legal offense.

Article 19

The government may allocate funds in the annual budgets for the encouragement of export. Such funds shall be dispensed to exporters to enable them to benefit from financial facilities, on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 According to the law amend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concerning the thir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plan of the I.R. of Iran, and the manner in which duties and other levies are established and collected from producers of goods, providers of services and imported goods,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have been implicitly repealed.

Article 20*

As of the beginning of the year 1373 (21 March 1994), the government shall be required to collect from importers in non-governmental sectors who import goods for commercial purposes, an additional levy of 1 per cent of the total customs duties and commercial benefit tax as an "especial charge", in respect of any imported goods. Funds collected thereby shall be credited to the country's general revenue account. Each year 100 per cent of funds so credited to the general revenue account shall be included in the annual budget law and allocated to the relevant executive organizations,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to be used for the encouragement and expansion of non-oil exports, commissioning of the Export Guarantee Fund, organizing business training and promotional programmes, in accordance with the executive ordinance of this law.

Article 21

In order to support domestic products and to formulate the country's trade policy, the Council of Ministers, having regard to the interests of consumers, shall draw up the legislative bill on customs duties in respect of any imported goods, and on the amendment of Article 37 of the Customs Affairs Law, and shall submit them, within two months from the approval date of this law, to the 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for approval.

Article 22

In order to safeguard the Iranian carpet industry and to provide an, appropriate ground for its protection on the world markets, the Ministry of Commerce is required to prevent, as of the beginning of the year 1374 (21 March 1995), carpets of over 30 knot count from being exported without an identification card. As of the above if I mentioned date, the Chambers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shall be required, upon the request of the exporter, to issue Identification card as a mandatory requirement, and prior to the said date as an encouragement.

Article 23

It shall be the dut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to draw up the executive ordinance of this law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its communication, and to have it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Article 24

The Ministry of Commerc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orderly enforcement of this law and the executive ordinance thereof.

The above Act, composed of twenty-four Articles and twenty-five Notes, was enacted in the open sitting of the 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on Sunday 26 September 1993 (4th of Mehr, 1372) and ratified by the Council of Guardians on 3 October 1993 (11 th of Mehr 1372).

Appendix Relating to Articles (10) and (11) of the Law on Export-Import
Regulation

THE LAW ON REGULATING BORDER TRADE ENACTED BY THE 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ON 28 SEPTEMBER 2005

Article 1

Border trade exchanges consist of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by license holding inhabitants of border regions, cooperatives residing in those regions, peddlers, border marketplaces, sailors, and crewmembers of vessels of maximum volume capacity of 500 tons and of a specific type, within the ceiling set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rticle 2

The geographic limit of the country's border trade exchanges and its alterations, the definition of border region residence and the manner of its verification shall be as laid down in Article (10) of the Law on Export-Import Regulations enacted on 26 September 1993.

Article 3

Peddler is a person who resides in a border region with a background of continuous residence of at least three years, holds a peddler card issued by the Provincial Commerce Organization and qualif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1) of the Civil Law.

Article 4

Border marketplace is an enclosed area situated in border localities and established in conformity to the standards set by the Government either independently or within the framework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luded betwee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adjoining countries. In border marketplace, the representative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carries out clearance formalities of permissible goods for border trade. In provincial joint marketplaces, border residents may exchange permissible goods and products with due regard to the Articles of this Law.

Article 5

In each border province there shall be a Council for Regulating Border Trade formed of the Governor General, or one of his pertinent deputies, as the Chairman, directors of Commerce, Industries & Mines, and Agricultural Jihad Organizations and directors-general of Information, Cooperation, State Controls, the provincial commander of Law Enforcement, the Attorney and the representative of border residents' cooperative companies. The council shall supervise over the orderly performance and enforcement of the Government's decisions and guidelines at the provincial marketplaces. The director of the Commerce Organization in the province shall act as the council's secretary.

Note 1. The removal and appointment of the border marketplace manager shall be effected by the decree of the Chief-General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Note 2.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Finance may renovate old customhouses or set up specialized Customs depending on the need, and foresee required funds in the annual budget.

Article 6

The total value of goods tradable in the border regions falling under this Law shall be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commensurate to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the number of inhabitants of the border regions. Such value for the whole country shall be equivalent to 3% (three percent) of the country's imports in the preceding year and must be affected against 3% (three percent) of non-oil exports in the preceding year.

Note 1. Exports against imports in a border region shall be subject to the ceiling specified for the same border.

Note 2. Importable goods accompanying sailors and vessel crew for personal consumption shall be exempted, by the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from payment of import duty at the exemption rate of 30% (thirty percent) to 100% (hundred percent) on public food items and a maximum of 50% (fifty percent) on home appliances.

Note 3. In order to promote exports from border regions, the Ministry of Commerce may grant necessary incentives such as export prize to goods that have completed customs formalities.

Article 7

The Ministry of Commerce, within the set value ceiling, shall determine the list and quantity of items importable into each border region by virtue of this Law.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to monitor the import ceiling.

Note 1. The importation, once in a year, of presents and gifts by border residents within the limit specified for goods is permissible. The presents and gifts so imported shall be subject to Article (39) of the Executive Ordinance of the Law on EXIM Regulations for the year 2005-2006 (1384).

Note 2. The transfer, sale or delegation to a third party of quota is permissible but exclusively to the border residents' cooperatives. Otherwise, it is prohibited.

Article 8

The Ministry of Commerce shall set the ceiling of the items importable according to this Law comprising part of the subsistence requirements and needs of border inhabitants. Such items shall be subject, after the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to import duty reduction of up to 100% (hundred percent) in the case of edible goods (public food items) and up to 50% (fifty percent) in the case of nonedible goods commensurate to the deprivation of the region.

Note 1. In the importation of these goods the observance of sanitary and quarantine laws and regulations is mandatory.

Note 2. The importation of goods falling under this Law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any duty or the 'difference'.

Article 9

Selling and buying of imported goods in the form of retail is permissible with due regard to Article (4) of this Law. The exit of said goods from border provinces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in quantities exceeding the ceiling set forth in Article (8) of this Law and with a commercial attribute may be effected by the endorsement of the Provincial Council for Regulating Border Trade and the payment of sums corresponding to the exemptions laid down in this Law.

Article 10

The apportionment of provincial import quota among border inhabitants, licensed border cooperatives and holders of peddling card shall be effected by the Provincial Council for Regulating Border Trade commensurate to the capacity and capability of the concerned actors in providing services to the border residents.

Not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on the cooperative sector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economy, the Cooperation Ministry shall supervise the activities of cooperative companies residing in border regions. The provincial Directorate-General of Cooperation shall report any offences to the Provincial Council for Regulating Border Trade

Article 11

Effective from the date on which the new list of importable goods and the level of their exemption are communicated to the provinces, all contradicting laws and regulations, except the statutory customs exemptions concerning Khorramshahr, Abadan and

Choubideh ports, shall be repealed. The existing marketplaces can carry on with thei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s long as the Government so determines.

Article 12

The executive ordinance of this Law shall be prepar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 cooperation with Ministries of Economic Affairs & Finance, Cooperation and the Interior within a maximum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its enactment and shall be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above Law, comprising twelve Articles and ten Notes, was enacted by the open session of the 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on Wednesday 28 September 2005 and ratified by the Guardian Council on 12 October 2005.

〈부록 IV〉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2010. 9. 8
개정 2012. 6.12
개정 2013. 7. 1
개정 2014. 1.20
개정 2014. 7. 21
개정 2014. 11. 26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 (이하 ‘교역 및 투자’라 한다)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거래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황허가”란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 외의 물품 등을 우려거래자 (Denial List) 등에게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이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무역거래자는 거래품목이 제5조 내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무역거래자는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무역거래자는 이 지침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의 제반규정 및 운용취지에 부합하게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

제4조(거래상대방) ① 거래상대방이 대량파괴무기 및 국제테러 등과 관련된 경우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이하, '금지대상'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② 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물품과 기술(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6조(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등) 제5조에 따른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7조(석유자원개발 관련 행위)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저장탱크, 운반선,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8조(정유제품 관련 행위) ① 정유제품(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 정유제품의 이란 내 운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③ 정유제품의 이란 내 수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

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④ 정유제품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9조(석유화학제품 관련 행위) ①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 석유화학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0조(조선, 해운, 항만분야 및 자동차분야 관련 행위) ① 이란의 조선, 해운, 항만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 이란의 자동차분야(승용차, 트럭, 버스, 모터사이클 및 관련부품을 포함)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1조(귀금속 및 특정물품 관련 행위) ① 별표 1에 규정된 귀금속을 직간접적으로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 별표 2에 규정된 특정물품을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의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2조(상황허가 이행) ① 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역거래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해당 상황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품 등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물품 등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지 확인서'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줄 것을 의뢰해 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장의 판정업무 지원 분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한 분야에 한한다.

제3절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 절차

제13조(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① 무역거래자가 이 지침에서 금지되지 않는 물품 등을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이하 '비금지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해당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대상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1부를 첨부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무역협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관련업계에 고지하여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하여금 확인서 발급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특별조치) ①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무역업계, 산업별 단체·협회 등이 이란과의 교역질서 유지 또는 자율적인 수출입 관리를 위하여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의 발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보류·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이전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현재 해당 비금지 확인서에 규정된 물품 등의 선적이 완료된 수출 건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세부 업무처리 지침)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4절 교역질서 유지

제16조(규정준수) ① 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해당여부 확인, 금지품목 해당여부 확인, 관련서식 작성 및 자료제출, 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상황허가 신청 등 관련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 지침이 정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위반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를 금지 품목 및 행위에 악용하는 등 제 1항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위반 사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무역거래자에 대해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의 효력 정지·취소 또는 발급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처분사유 및 처분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차 개정, 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전락물자관리원이 이미 접수 및 심사를 진행중인 비금지 확인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11조의 특별조치는 해당 특별조치 시행일 현재 접수 및 심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배제)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물품 등을 교역 또는 투자함에 있어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차 개정,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정지)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정지한다.

제3조(적용기준) 이 지침 시행 전에 수출, 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면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으로 본다.

부 칙 <3차 개정, 2014.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4차 개정, 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5차 개정,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별표 1]

귀금속(제11조제1항 관련)

1. 은 (금 또는 백금으로 도금한 것 포함) 미가공·반가공품 또는 분말
2. 금 (백금으로 도금한 것 포함) 미가공·반가공품 또는 분말
3. 금으로 도금된 비금속(base metal) 또는 은으로서, 반가공품 이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4. 백금 미가공·반가공품 또는 분말
5. 이리듐
6. 오스뮴
7. 팔라듐
8. 로듐
9. 루테튬
10. 백금으로 도금된 비금속(base metal), 은 또는 금으로서, 반가공품 이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11.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귀금속 혹은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는 웨이스트 및 스크랩(귀금속의 회수를 위해 주로 사용)

[별표 2]

특정물품(제11조제2항 관련)

I. 흑연, 원자재 · 반제품 금속 및 석탄

1. 철강 (다음의 통일상품 분류체계(HS) 품목 포함)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HS 7201)
- 합금철(ferro-alloy)(HS 7202)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럼프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순도가 최저 전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HS 7203)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HS 7204)
- 알갱이와 가루(선철, 스피그라이즌, 철강의 것으로 한정)(HS 7205)
-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HS 7206)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HS 7207)
-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HS 7218)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HS 7224)

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다음의 통일상품 분류체계(HS) 품목 포함)

- 알루미늄의 괴(HS 7601)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HS 7602)
-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HS 7603)
- 알루미늄의 선(HS 7605)
- 알루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HS 7606)
- 알루미늄의 관 연결구류(HS 7609)
- 알루미늄의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

(HS 7614)

3. 티타늄 붕산화합물 또는 티타늄붕산착화합물의 비금속(base metal)
4.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5. 붕소 및 붕소 합금
6. 코발트 및 코발트 합금
7. 구리 침투 텅스텐
8. 베릴륨동(베릴륨구리)
9. 게르마늄 및 게르마늄 합금
10. 흑연
11. 하스텔로이
12. 인코넬
1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14.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합금
15. 넵투늄-237 및 넵투늄-237 합금
16. 니켈 및 니켈 합금
17. 니켈알루미늄 합금
18. 니오비움 및 니오비움 합금
19. 니오비움-티타늄 섬유
20. 플루토늄 및 플루토늄 합금
21. 다공성 니켈
22. 은 침투 텅스텐
23. 탄탈륨 및 탄탈륨 합금
24. 텔루륨 및 텔루륨 합금
25. 티타늄알루미늄 합금
26.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27. 텅스텐, 텅스텐 카바이드 및 텅스텐 합금
28. 우라늄-티타늄 합금
29. 지르코늄, 지르코늄 합금 및 지르코늄 화합물

30.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

Ⅱ. 통합산업프로세스 관련 소프트웨어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로서 핵, 군사, 가스, 석유, 해양, 항공, 금융 및 건설 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것.

주 :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란 재무회계, 관리회계, 인사, 제조, 물류 관리, 프로젝트 관리, 고객관리, 데이터 서비스 또는 접근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Ⅲ. 기타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정하여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공지하는 물품

〈부록 V〉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신청)서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신청)서
Confirmation(Application) Form for Unprohibited Trade and Investment

처리기간 : 15일
Process due : 15 days

①신청인 Applicant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성명 Name	신청자 성명 Name of Applicant	
	주 소 Address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전 화 Telephon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②거래 상대방 Customer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뒷면 에 추가기입		전 화 Telephone	
	주 소 Address				
③거래구분 Type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물자 <input type="checkbox"/> 기술(용역, 서비스)	④거래품목(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 _____ 등 총 _____ 건 ※ 상세 품목정보는 뒷면에 기입		
⑤ 계약년월일 Date of Contract (yyyy/mm/dd)					
⑥ 결제(예상)년월일 Date of Settlement (yyyy/mm/dd)					
⑦ 제재대상자 해당여부 Entity Classification (Sanctioned/unsanctioned)		□ 해당 □ 비해당 신청인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였음을 서약합니다.			
⑧ 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Export License(Catch-all)		⑨ 금지품목 해당여부 Item Classification (prohibited/unprohibited)			
⑩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⑪ 발급번호 Issue No.			
⑫ 비고 Remarks					
<p>「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였음을 서약하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대상에 대한 금지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s, confirming that customer(s) stated in ② above does not include a sanctioned entity, 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item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12(1) of the said Guidelines.</p> <p style="text-align: right;">20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p>					
<p>「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⑨항과 같이 금지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이란 교역 및 투자 시 자금결제 등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거래 시 금융기관과 개별 기업 및 개인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⑨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13(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 Issuance of this confirmation form does not guarantee the safety of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the comple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inancial institutions, business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re advised to exercise vigilance over banking transactions with Iran.</p> <p style="text-align: right;">20 기관장 (인) Sealed by Head of Classification Agency</p>					
<p>구비서류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 주의 제⑧항 내지 제⑫항은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Required Documents: Documents indicating the functions, usage an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stated items such as manuals, catalogues, or specifications - 1 copy ※ Note : Items ⑧~⑫ are to be filled in by issuing agency.</p>					

〈부록 V〉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신청)서 89

상세 품목정보 Item Information			
HS번호 HS Code	물품명 (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	형식 및 규격 Specifications	
		모델번호 및 모델명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Model Number & Name (Items developed or produced from the technology)	규격/용도 Specifications/Usage
거래상대방 정보 Customer Information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주소 Address	전화 Telephone

〈부록 VI〉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부 칙 〈5차 개정, 2014.11.26〉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규정
〈신 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적용 유예 기간 연장
[별지 제1호 서식] ⑤ 총 거래가액 Total Price ⑥ 계약년월일 Date of Contract (yyyy/mm/dd) ⑦ 결제(예상)년월일 Date of Settlement (yyyy/mm/dd) ⑧ 제재대상자 해당여부 Entity Classification (Sanctioned/unsanctioned) ⑨ 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Export License(Catch-all) ⑩ 금지품목 해당여부 Item Classification (prohibited/unprohibited) ⑪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⑫ 발급번호 Issue No. ⑬ 비고 Remarks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13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⑤ 총 거래가액 Total Price ⑤ 계약년월일 Date of Contract (yyyy/mm/dd) ⑥ 결제(예상)년월일 Date of Settlement (yyyy/mm/dd) ⑦ 제재대상자 해당여부 Entity Classification (Sanctioned/unsanctioned) ⑧ 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Export License(Catch-all) ⑨ 금지품목 해당여부 Item Classification (prohibited/unprohibited) ⑩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⑪ 발급번호 Issue No. ⑫ 비고 Remarks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13조제1항의	비금지 확인서 양식의 총거래가액 삭제 및 항목별 번호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규정에 의하여 제⑩항과 같이 금지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p> <p>-----</p> <p>-----</p> <p>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⑩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13(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p> <p>-----</p> <p>-----</p> <p>-----</p> <p>※ 주의 제⑨항 내지 제⑬항은 확인서 발급 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p> <p>-----</p> <p>-----</p> <p>-----</p> <p>※ Note : Items ⑨~⑬ are to be filled in by issuing agency.</p>	<p>규정에 의하여 제⑨항과 같이 금지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p> <p>-----</p> <p>-----</p> <p>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⑨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13(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p> <p>-----</p> <p>-----</p> <p>-----</p> <p>※ 주의 제⑧항 내지 제⑫항은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p> <p>-----</p> <p>-----</p> <p>-----</p> <p>※ Note : Items ⑧~⑫ are to be filled in by issuing agency.</p>	

〈부록 VII〉 지정선사 현황

선사명	구분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현대상선	컨테이너	이재혁	차장	02-3706-6345
한진해운	컨테이너	김현철	과장	01-3782-1175
Emirates Shipping	컨테이너	임재용	이사	01-756-1821 (내선: 284)
에버그린	컨테이너	김승복	차장	01-3702-1820
고려해운	컨테이너	이종래	차장	02-311-6253
마리소	벌크	박성우	상무	02-752-4200
킹스오션 Shipping	벌크	이재호	차장	02-736-4602
SC 글로벌	벌크	강원구	상무	051-714-5880

〈부록 VIII〉 등급별 수입 품목군

순위 (Priority)	품 목
1	필수적인 아이템 : 붉은 고기(red meat), 흰살고기(white meat), 버터, 살아있는 양, 옥수수, 쌀, 콩, 식용오일(eating oil), 설탕, 산업용 분유(industrial dry milk), 분유(baby dry milk), 밀, 동물용 옥수수(animal corn), 렌즈콩(lentils), 데이트 오일(Date oil)
2	의약품, 이란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의료용과 치과용품들
3	살아있는 젖소, 백신을 만드는 달걀(SPF eggs for making vaccine), 콩, 양식과 새우를 위한 먹이 (foods for Shrimp and other Aquaculture), 미네랄과 화학적 비료(mineral and chemical Fertilizers), 철과 구리 폐기물(iron and copper wastes), 모든 종류의 살충제(all kinds of insecticides), 모든 종류의 독약(all kinds of poisons), 생선알(fish eggs)
4	SBR, 트럭과 버스 타이어, 철로 합금된 페로(Ferro alloyed of iron), 철제품들(iron products), CD-Bar, 도로 건설 장비, 과립제(granules), 철강 반제품 (semi products of iron)
5	고무(Gums), 송진(resins), 코코넛오일, 팜오일, 탄산망간(MN carbonate), 우라늄(uranium), 높은 가치의 메탈스톤(high value metal stone), 희유가스(rare gases), 질산염(nitrates), 방사능 화학 방사성 화학 원소(radioactive chemicals elements), paints, 오가닉 물질(organic materials), 효소(enzymes), 나무, 종이, 실(yarn), 실험밸브(laboratory valves), 스팀 터빈(steam turbines), 전자용품(electronic equipment), 트랙터(tractors), 항공기계(airline machines), 측정기계(measurements equipment), 암모니아고무(ammoniac)
6	바나나, 감자 녹말(farina), 블랙티(black tea), 지방(other fats), 올리브오일, 광택오일(polish oil), 젖당(lactose), 과일주스(fruit juice), 접착제(glues), 폴리머(polymers), 에너지 전환 벨트(energy transfer belts), 섬유 유리(glass fibers), 철합금(iron alloy), 도로 건설 기계(road construction machines), 신문용 종이(newspaper papers), 상자와 종이(carton and papers), 산업용 오일 (industrials oil), 모든 종류의 실, 수송기계 여유 부품(transportation vehicle spare parts), 트럭
7	식물 추출물(Vegetable extracts), 몰트(malt), 초코렛 파우더, Tabaco, 프린트용 잉크, 섬유 (fibers), 코코넛 가루(coconut powder), 측정기계(calculator machine), TV와 음악플레이어, 카메라, 램프와 조명(lamp and light items), 초코릿 크림(chocolate cream),
8	연필, 램프, 배터리, 건설기계(constriction machines), 수공구(hands tools), 칼날(blade), 부엌과 가정용 악세서리(kitchen and home accessories), 파이핑 악세서리(piping accessories), 금, 은, 냉장고, 자동차 타이어, 세탁기, 가스용기(gas cylinder), 식기세척기
9	새알(Bird eggs), 야채(vegetables), 녹차, 향신료(Spices), 과일주스, 화장품, 담배, 종이, 음악용품, 가구, 돌쌓기용 석재(cut stone), 노트북, 태블릿
10	암탉(Hen), 말, 조류 고기(birds meats), 생선(fish meat), 장갑(gloves), stocks, fiber covers, 카페트, 벽지, 껌과 사탕, 초코릿, 담배, 우편카드(postal card), 가방과 서류가방, 옷, 전화기, 핸드폰, 1500cc. 넘는 차(car with over than 1500cc.)

〈부록 IX〉 석유화학제품목록

1. 뷰텐(butene)
2. 에틸헥산올(ethylhexanol)
3. 아세트산(acetic acid)
4. 아크릴로니트릴부타다이엔스티렌(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5. 알라클로(alachlor)
6.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7.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8. 무수암모니아(anhydrous ammonia)
9. 알곤(argon)
10. 뷰타클로로(butachlor)
11. C2+, C3+, C4 cut
12. 염화 파라핀(chlorinated paraffin)
13. 염소(chlorine)
14. 클로라세틸 클로라이드(chloracetyl chloride)
15. 구연산(citric acid)
16. 디암모늄 포스페이트(diammonium phosphate)
17.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8.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19.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20. 디옥틸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21. 도데사이클벤젠(dodecycle benzene)
22. 에테인(ethane)
23. 에톡실레이트류(ethoxylates)

24. 에틸벤젠(ethylbenzene)
25. 에틸렌디클로라이드(ethylene dichloride)
26.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27. 헤비알킬벤젠(heavy alkyl benzene)
28. 폴리에틸렌(polyethylene)(HDPE, MDPE, LDPE, LLDPE 포함)
29. 염산(hydrochloric acid)
30. 이소프렌(isoprene)
31. 선형알킬벤젠(linear alkyl benzene)
32. 멜라민(melamine)
33. 메틸터셔리뷰틸에터(methyl tertiary butyl ether)
34.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35.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
36. 모노에틸렌글리콜(monoethylene glycol)
37. 질산(nitric acid)
38. 질소(nitrogen)
39. 자일렌, 크실렌(xylene)
40. 펜텐(pentene)
41. 퍼클로린(perchlorine)
42. 인산(phosphoric acid)
43.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44. 폴리부타디엔(polybutadiene)
4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46.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47. 폴리스티렌(PS, polystyrene)
48.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49. 프로필렌(propylene)
50. 고순도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51. 열분해가솔린(pyngas, pyrolysis gasoline)

52. 라피네이트(raffinate)
53. 소다회(soda ash)
54.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55.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56.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57. 가성소다(sodium hydroxide)
58.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59. 스티렌(styrene)
60. 스티렌-아크릴로나이트 공중합체(styrene acrylonite copolymer)
61. 황(sulfur)
62. 황산(sulfuric acid)
- 63 스티렌-부타디엔(styrene butadiene)
64.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toluene diisocyanate)
65. 트리에틸렌글리콜(triethylene glycol)
66. 비닐클로라이드 단량체(VCM, vinyl chloride monomer)
67. 상기 66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화학물질로서, 아로마틱, 올레핀, 합성가스(Synthesis gas) 및 이들의 유도체(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암모니아, 메탄올, 우레아 포함)

〈부록 X〉 이란 공인 국제 표준

	공인 표준 유형	공인 표준 기호
1	Iranian National Standards	ISIRI
2	International Standards	ISO, ITU, IEC, CODEX
3	European Standards	BSEN, DINEN, (BSI)England, (DIN)Germany, (AFNOR)France, (UNI)Italy, (NNI)Netherland, (AFNOR)Spain, (IPQ)Portugal, (IBN)Belgium, (ON)Austria, (DS)Denmark, (SEE)Luxemburg, (SFS)Finland, (SIS)Sweden, (NSAI)Ireland, (ELOT)Greece
4	North American Standards	ANSI, ASTM, ASME, UL, API, AGI, NFPA
5	Japan National Standards	JIS
6	South Korea National Standard	KS
7	Australia National Standards	AS
8	기타 표준 (ISIRI의 개별 승인완료)	1. 하기 러시아 표준(GOST) a) GOST 26020 of Iron beams(size:18,16,14) b) GOST 8239 of Iron beams size 20 c) GOST 5781 of bar grades(A-I, II, III) d) GOST 8240 of chute e) GOST 8509 of iron cornerstone with equal wing f) GOST 8510 of iron cornerstone with equal wing 2. 하기 중국표준(GB) a) GB 706-88 & GB 700-88 regarding Iron Beams with grades Q275, Q235D b) GB 1499 regarding bar c) GB 707-88 regarding chute

〈부록 XI〉 미국 재무부 SDN List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BANK MARKAZI JOMHOURI ISLAMI IRAN	PO Box 15875/7177, 144 Mirdamad Blvd	Entity	IRAN
BANK MASKAN	PO Box 11365/5699, No 247 3rd Floor Fedowski Ave, Cross Sarhang Sakhaei St	Entity	IRAN
BANK REFAH KARGARAN	No. 40 North Shiraz Street, Mollasadra Ave, Vanak Sq	Entity	IFSR, IRAN, NPWMD
BANK OF INDUSTRY AND MINE (OF IRAN)	PO Box 15875-4456, Firouzeh Tower, No 1655 Vali-Asr Ave after Chamran Crossroads	Entity	IFSR, IRAN, NPWMD
BANK KESHAVARZI IRAN	PO Box 14155-6395, 129 Patrice Lumumba St, Jalal-al-Ahmad Expressway	Entity	IRAN
BANK TEJARAT	PO Box 11365-5416, 152 Taleghani Avenue	Entity	IFSR, IRAN, NPWMD
EUROPAISCH-IRANISCHE HANDELSBANK AG	Hamburg Head Office, Depenau 2, D-20095 Hamburg, P.O. Box 101304, D-20008 Hamburg	Entity	IFSR, IRAN, NPWMD
BANK SADERAT PLC	5 Lothbury	Entity	IFSR, IRAN, SDGT
HEKMATYAR, Gulbuddin		Individual	SDGT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Central District	Entity	DPRK2, NPWMD
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Langare Street, Nobonyad Square	Entity	IFSR, NPWMD
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	Damavand Tehran Highway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SHAHID BAKERI INDUSTRIAL GROUP		Entity	IFSR, NPWMD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P.O. Box 14144-1339, End of North Karegar Avenue	Entity	IFSR, NPWMD
NOVIN ENERGY COMPANY	End of North Karegar Avenue	Entity	IFSR, NPWMD
MESBAH ENERGY COMPANY	77 Armaghan Gharbi Street, Valiasr Blve	Entity	IFSR, NPWMD
NAWAY, Haji Ali		Individual	SDNTK
SANAM INDUSTRIAL GROUP	Pasdaran Road 15	Entity	IFSR, NPWMD
YA MAHDI INDUSTRIES GROUP	PO Box 19395-4731	Entity	IFSR, NPWMD
KALAYE ELECTRIC COMPANY	33 Fifteenth (15th) Street, Seyed-Jamal-Eddin-Assad Abadi Avenue	Entity	IFSR, NPWMD
KAVOSHYAR COMPANY	Vanaq Square, Corner of Shiraz Across No. 71, Molla Sadra Ave.	Entity	IFSR, NPWMD
PIONEER ENERGY INDUSTRIES COMPANY	P.O. Box 81465-361	Entity	IFSR, NPWMD
BANK SEPAH	Imam Khomeini Square	Entity	IFSR, IRAN, NPWMD
DERAKHSHANDEH, AHMAD	c/o BANK SEPAH, No. 33 Hormozan Building, Pirozan St., Sharak Ghods	Individual	IFSR, NPWMD
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	P.O. Box 19585-777, Pasdaran Street, Entrance of Babaie Highway, Permanent Expo of Defence Industries Organization	Entity	IFSR, NPWMD
BANK SADERAT IRAN	PO Box 15745-631, Bank Saderat Tower, 43 Somayeh Avenue	Entity	IFSR, IRAN, SDGT
PARS TRASH COMPANY	33 Fifteenth (15th) Street, Seyed-Jamal-Eddin-Assad Abadi Avenue	Entity	IFSR, NPWMD
FARAYAND TECHNIQUE	End of North Karegar Avenue, Shomali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QANNADI, Mohammad	c/o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Individual	IFSR, NPWMD
LEILABADI, Ali Hajinia	c/o MESBAH ENERGY COMPANY	Individual	IFSR, NPWMD
FAJR INDUSTRIES GROUP	P.O. Box 1985-777	Entity	IFSR, NPWMD
MIZAN MACHINE MANUFACTURING GROUP	P.O. Box 16595-365	Entity	IFSR, NPWMD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Entity	HRIT-IR, IFSR, IRAN-HR, IRGC, NPWMD
MINISTRY OF DEFENSE FOR ARMED FORCES LOGISTICS	located on the west side of Dabestan Street, Abbas Abad District	Entity	IFSR, NPWMD
MARTYRS FOUNDATION	P.O. Box 15815-1394	Entity	IFSR, SDGT
AL-SHEIBANI, Abu Mustafa		Individual	IRAQ3
KHATAM OL ANBIA GHARARGAH SAZANDEGI NOOH	No. 221, Phase 4, North Falamak-Zarafshan Intersection, Shahrak-E-Ghods	Entity	IFSR, IRGC, NPWMD
ORIENTAL OIL KISH	Second Floor, 96/98 East Atefi St., Africa Blvd.	Entity	IFSR, IRGC, NPWMD
GHORB KARBALA	No. 2 Firouzeh Alley, Shahid Hadjipour St., Resalat Highway	Entity	IFSR, IRGC, NPWMD
SEPASAD ENGINEERING COMPANY	No. 4 Corner of Shad St., Mollasadra Ave., Vanak Square	Entity	IFSR, IRGC, NPWMD
GHORB NOOH	P.O. Box 16765-3476	Entity	IFSR, IRGC, NPWMD
OMRAN SAHEL		Entity	IFSR, IRGC, NPWMD
SAHEL CONSULTANT ENGINEERS	No. 57, Eftekhar St., Larestan St., Motahhari Ave	Entity	IFSR, IRGC, NPWMD
HARA COMPANY		Entity	IFSR, IRGC, NPWMD
GHARARGAHE SAZANDEGI GHAEM	No. 25, Valiasr St., Azadi Sq.	Entity	IFSR, IRGC,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BANK MELLAT	Head Office Bldg, 327 Taleghani Ave	Entity	IFSR, IRAN, NPWMD
BANK MELLI IRAN	PO Box 11365-171, Ferdowsi Avenue	Entity	IFSR, IRAN, NPWMD
BANK KARGOSHAEE	587 Mohammadiye Square, Mowlavi St.	Entity	IFSR, NPWMD
BANK MELLI IRAN INVESTMENT COMPANY	Rafiee Alley, Nader Alley, 2 After Serahi Shahid Beheshti, Vali E Asr Avenue	Entity	IFSR, NPWMD
BANK MELLI PRINTING AND PUBLISHING CO.	Km 16 Karaj Special Road	Entity	IFSR, NPWMD
MALEKI, Naser	c/o SHIG	Individual	IFSR, NPWMD
AL LAMI, Isma'il Hafiz		Individual	IRAQ3
FORUZANDEH, Ahmed	Qods Force Central Headquarters, Former U.S. Embassy Compound	Individual	IRAQ3, IRGC
FUTURE BANK B,S,C.	P.O. Box 785, City Centre Building, Government Avenue	Entity	IFSR, IRAN, NPWMD
HOJATI, Mohsen	c/o Fajr Industries Group	Individual	IFSR, NPWMD
KETABACHI, Mehrdada Akhlaghi	c/o SBIG	Individual	IFSR, NPWMD
SHAHID SATTARI INDUSTRIES	Southeast Tehran	Entity	IFSR, NPWMD
TAMAS COMPANY	No. 84, 20th Street, Northern Kargar Avenue	Entity	IFSR, NPWMD
AMMUNITION AND METALLURGY INDUSTRIES GROUP	P.O. Box 16765-1835, Pasdaran Street	Entity	IFSR, NPWMD
7TH OF TIR	Mobarakeh Road Km 45	Entity	IFSR, NPWMD
PARCHIN CHEMICAL INDUSTRIES	Khavaran Road Km 35	Entity	IFSR, NPWMD
JOZA INDUSTRIAL COMPANY	P.O. Box 16595-159	Entity	IFSR, NPWMD
NUCLEAR RESEARCH CENTER FOR	P.O. Box 31585-4395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AGRICULTURE AND MEDICINE			
ESFAHAN NUCLEAR FUEL RESEARCH AND PRODUCTION CENTER	P.O. Box 81465-1589	Entity	IFSR, NPWMD
JABBER IBN HAYAN	c/o AEOI-JIHRD P.O. Box 11365-8486	Entity	IFSR, NPWMD
SAFETY EQUIPMENT PROCUREMENT COMPANY	P.O. Box 16785-195	Entity	IFSR, NPWMD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No. 37, Aseman Tower, Sayyade Shirazee Square, Pasdaran Ave., P.O. Box 19395-1311	Entity	IFSR, NPWMD
VALFAJR 8TH SHIPPING LINE CO SSK	Shahid Azodi St., Karimkhan Zand Ave., Abiar Alley, P.O. Box 4155	Entity	IFSR, NPWMD
KHAZAR SEA SHIPPING LINES	M. Khomeini St., Ghazian, Bandar Anzali	Entity	IFSR, NPWMD
SHIPPING COMPUTER SERVICES COMPANY	No. 37, Asseman, Shahid Sayyad Shirazeesq, Pasdaran Ave., P.O. Box 1587553-1351	Entity	IFSR, NPWMD
IRAN O MISR SHIPPING COMPANY	El Nahda Building, Elnahda St., 4th Floor	Entity	IFSR, NPWMD
IRISL MARINE SERVICES & ENGINEERING COMPANY	No. 221, Northern Iranshahr St., Karimkhan Ave.	Entity	IFSR, NPWMD
SOUTH SHIPPING LINE IRAN	Qaem Magham Farahani St.	Entity	IFSR, NPWMD
IRISL MULTIMODAL TRANSPORT CO.	No. 25, Shahid Arabi Line, Sanaei St., Karimkhan Zand St.	Entity	IFSR, NPWMD
IRAN O HIND SHIPPING COMPANY	265, Next to Mehrshad, Sedaghat St., Opposite of Mellat Park, Vali Asr Ave.	Entity	IFSR, NPWMD
ARMAMENT INDUSTRIES GROUP	Pasdaran Ave., P.O. Box 19585/777	Entity	IFSR, NPWMD
SHAHLAI, Abdul Reza		Individual	IFSR, IRAQ3, IRGC, SDGT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IRAN COMMUNICATION INDUSTRIES	P.O. Box 19295-4731,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SHIRAZ ELECTRONICS INDUSTRIES	P.O. Box 71365-1589	Entity	IFSR, NPWMD
IRAN ELECTRONICS INDUSTRIES	P.O. Box 19575-365, Shahied Langari Street, Noboniad Sq, Pasdaran Ave, Saltanad Abad	Entity	IFSR, IRAN-TRA, NPWMD
IRAN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IAL COMPANY	P.O. Box 83145-311, 28 km Esfahan - Tehran Freeway, Shahin Shahr	Entity	IFSR, NPWMD
FARASAKHT INDUSTRIES	P.O. Box 83145-311, Kilometer 28, Esfahan - Tehran Freeway, Shahin Shahr	Entity	IFSR, NPWMD
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Tose'e Tower, Corner of 15th St., Ahmed Qasir Ave., Argentine Square	Entity	IFSR, IRAN, NPWMD
EDBI STOCK BROKERAGE COMPANY		Entity	IFSR, NPWMD
EDBI EXCHANGE COMPANY		Entity	IFSR, NPWMD
NAVAL DEFENCE MISSILE INDUSTRY GROUP		Entity	IFSR, NPWMD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Hafez Crossing, Taleghani Avenue, P.O. Box 1863 and 2501	Entity	IFSR, IRAN, IRGC, NPWMD
NAFTIRAN INTERTRADE CO. (NICO) LIMITED	41, 1st Floor, International House, The Parade	Entity	IFSR, IRAN, IRGC, NPWMD
FREE LIFE PARTY OF KURDISTAN		Entity	SDGT
CEMENT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No. 241, Mirdamad Street	Entity	IFSR, NPWMD
MAZANDARAN CEMENT COMPANY	Africa Street, Sattari Street No. 40, P.O. Box 121	Entity	IFSR, NPWMD
SHOMAL CEMENT COMPANY	Dr Beheshti Ave., No 289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MAZANDARAN TEXTILE COMPANY	Kendovan Alley 5, Vila Street, Enghelab Ave., P.O. Box 11365-9513	Entity	IFSR, NPWMD
MELLI AGROCHEMICAL COMPANY, P.J.S.	Mola Sadra Street, 215 Khordad, Sadr Alley No. 13, Vanak Sq., P.O. Box 15875-1734	Entity	IFSR, NPWMD
FIRST PERSIA EQUITY FUND	Rafi Alley, Vali Asr Avenue, Nader Alley, P.O. Box 15875-3898	Entity	IFSR, NPWMD
KHORASAN METALLURGY INDUSTRIES	Khalaj Road, End of Seyedi Street	Entity	IFSR, NPWMD
KAVEH CUTTING TOOLS COMPANY	Km 4 of Khalaj Road, End of Seyedi Street	Entity	IFSR, NPWMD
AMIN INDUSTRIAL COMPLEX	Amin Industrial Estate, Khalage Rd., Seyedi District	Entity	IFSR, NPWMD
YAZD METALLURGY INDUSTRIES	Pasdaran Avenue, Next To Telecommunication Industry	Entity	IFSR, NPWMD
SHAHID SAYYADE SHIRAZI INDUSTRIES	Next To Nirou Battery Mfg. Co, Shahid Babaii Expressway, Nobonyad Square	Entity	IFSR, NPWMD
NIRU BATTERY MANUFACTURING COMPANY	End of Pasdaran Avenue, Nobonyad Square, P.O. Box 19575-361	Entity	IFSR, NPWMD
AL-MUHANDIS, Abu Mahdi	Al Fardoussi Street	Individual	IRAQ3
HONG KONG ELECTRONICS	Sanaee St.	Entity	NPWMD
DIVANDARI, Ali	c/o Bank Mellat	Individual	IFSR, NPWMD
IRANIAN MINES AND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No. 39, Sepahbod Gharani Avenue, Ferdousi Square	Entity	IRAN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No. 104, North Sheikh Bahaei Blvd., Molla Sadra Ave.	Entity	IRAN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IRAN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No. 1339, Vali Nejad Alley, Vali-e-Asr St., Vanak Sq.	Entity	IRAN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INTERNATIONAL	41, 1st Floor, International House, The Parade	Entity	IRAN, ISA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	No. 4, Saba Blvd., Africa Blvd.	Entity	IRAN
IRAN INSURANCE COMPANY	107 Dr Fatemi Avenue	Entity	IRAN
PETROPARS LTD.	No. 35, Farhang Blvd., Saadat Abad	Entity	IRAN
PETROIRAN DEVELOPMENT COMPANY (PEDCO) LIMITED	41, 1st Floor, International House, The Parade	Entity	IR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Vali Asr Building, Jam e Jam Street, Vali Asr Avenue	Entity	IRAN
MACHINE SAZI ARAK CO. LTD.	P.O. Box 148	Entity	IRAN
WEST SUN TRADE GMBH	Winterhuder Weg 8	Entity	IRAN
QASEMI, Rostam		Individual	IFSR, IRGC, NPWMD
RAHAB INSTITUTE	Ghorb-e Ghaem Building, Valiasr St., Azizi Blvd., Azadi Sq.	Entity	IFSR, IRGC, NPWMD
MAKIN INSTITUTE	No. 2 Iravan St. - Tishfoon St. - Khaje Abdol ah Ansari St. - Shariati St.	Entity	IFSR, IRGC, NPWMD
IMENSAZEN CONSULTANT ENGINEERS INSTITUTE	No. 5/1, Niroom Alley, Padegan-e-Valiasr Street, Sepah Square	Entity	IFSR, IRGC, NPWMD
FATER ENGINEERING INSTITUTE	No. 25, Valiasr Jonoobi, Azizi Street, Azadi Sq. NE	Entity	IFSR, IRGC, NPWMD
POST BANK OF IRAN	237 Motahari Avenue	Entity	IFSR, IRAN,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JAVEDAN MEHR TOOS		Entity	IFSR, NPWMD
SABET, Javad Karimi	c/o Novin Energy Company	Individual	IFSR, NPWMD
MSP KALA NAFT CO, TEHRAN	242 Sepahbod Gharani Street, Karim Khan Zand Bridge, Corner Kalantari Street, 8th Floor, P.O. Box 15815-1775/15815-3446	Entity	IRAN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AIR FORCE		Entity	IFSR, IRGC, NPWMD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MISSILE COMMAND		Entity	IFSR, IRGC, NPWMD
RAH SAHEL INSTITUTE		Entity	IFSR, IRGC, NPWMD
SEPANIR OIL AND GAS ENGINEERING COMPANY	No. 319 Shahid Bahonar Street	Entity	IFSR, IRGC, NPWMD
VAHIDI, Ahmad	c/o MODAFL	Individual	IFSR, NPWMD
HAFIZ DARYA SHIPPING CO	No 60, Ehteshamiyeh Square, 7th Ney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SOROUGH SARZAMIN ASATIR SHIP MANAGEMENT COMPANY	No. 5 Shabnam Alley, Golzar Street, Fajr Street, Shahid Motahari Avenue	Entity	IFSR, NPWMD
SAFIRAN PAYAM DARYA SHIPPING COMPANY	No. 3, 8th Narenjestan Street, Artesh Boulevard, Farmaniyah Avenue	Entity	IFSR, NPWMD
JAFARI, Mohammad Ali	c/o IRGC	Individual	IFSR, IRAN-HR, IRGC, NPWMD
MAHAB GHODSS CONSULTING ENGINEERING COMPANY	No. 17, Dastgerdy Avenue, Takharestan Alley, 19395-6875	Entity	IRAN
SINA BANK	187 Motahhari Avenue, P.O. Box 1587998411	Entity	IRAN
IRANIAN MINISTRY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bounded roughly by Sanati Street on the west, 30th Street on the south, and Iraqi Street on the east	Entity	HRIT-IR, IFSR, IRAN-HR, SDGT, SYRIA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FIRST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SECOND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THIRD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FOUR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FIF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SIX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SEVEN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EIGH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NIN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TEN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ELEVEN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TWELF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THIRTEEN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FOURTEEN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FIFTEENTH OCEAN GMBH & CO. KG	Schottweg 5	Entity	IFSR, NPWMD
MOSLEHI, Heydar	Ministry of Intelligence, Second Negarestan Street, Pasdaran Avenue	Individual	IRAN-HR
SARKANDI, Ahmad	No 143 Shahid Lavasani Avenue, Farmanieh	Individual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NABIPOUR, Ghasem	143 Shahid Lavasani Avenue, Farmanieh	Individual	IFSR, NPWMD
KERMAN SHIPPING CO LTD	143/1 Tower Road, SLM1604	Entity	IFSR, NPWMD
LANCELIN SHIPPING COMPANY LIMITED	Fortuna Court, Block B, 284 Archiepiskopou Makariou C' Avenue, 2nd Floor, 3105	Entity	IFSR, NPWMD
SHERE SHIPPING COMPANY LIMITED	143/1 Tower Road, SLM1604	Entity	IFSR, NPWMD
TONGHAM SHIPPING CO LTD	143/1 Tower Road, SLM1604	Entity	IFSR, NPWMD
UPPERCOURT SHIPPING COMPANY LIMITED	143/1 Tower Road, SLM1604	Entity	IFSR, NPWMD
VOBSTER SHIPPING COMPANY LTD	143/1 Tower Road, SLM1604	Entity	IFSR, NPWMD
JUNDALLAH		Entity	FTO, SDGT
MOALLEM INSURANCE COMPANY	No 56, Haghani Boulevard, Vanak Square	Entity	IFSR, NPWMD
ASHTHEAD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BYFLEET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COBHAM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DORKING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EFFINGHAM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FARNHAM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GOMSHALL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HORSHAM SHIPPING COMPANY LIMITED	Manning House, 21 Bucks Road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AFZALI, Ali	c/o Bank Mellat	Individual	IFSR, NPWMD
PARS OIL AND GAS COMPANY	No. 133, Side of Parvin Etesami Alley, opposite Sazman Ab - Dr, Fatemi Avenue	Entity	IRAN
BONYAD TAAVON SEPAH	Niayes Highway, Seoul Street	Entity	IFSR, IRGC, NPWMD
ANSAR BANK	Building No. 539, North Pasdaran Street	Entity	IFSR, IRAN, NPWMD
LINER TRANSPORT KISH	Central Office: Office No. 141, Ground Floor, Kish City Services Building	Entity	IFSR, SDGT
MEHR BANK	204 Taleghani Ave.	Entity	IFSR, IRGC, NPWMD
ALPHA EFFORT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SANDFORD GROUP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SMART DAY HOLDINGS GROUP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SYSTEM WISE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LOGISTIC SMART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NEW DESIRE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ADVANCE NOVEL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CONCEPT GIANT LIMITED	15th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PARTNER CENTURY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SINO ACCESS HOLDINGS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TRUE HONOUR HOLDINGS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BEST PRECISE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GREAT METHOD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NEUMAN LIMITED	15th Floor, Tower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SACKVILLE HOLDINGS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TRADE TREASURE LIMITED	15th Floor, Tower One Lippo Center, 89 Queensway	Entity	IFSR, NPWMD
SHAHID AHMAD KAZEMI INDUSTRIES GROUP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M. BABAIE INDUSTRIES	P.O. Box 16535-176	Entity	IFSR, NPWMD
MULTIMAT IC VE DIS TICARET PAZARLAMA LIMITED SIRKETI	Bagdat Caddesi, Burc Sitesi, Number 117 A Blok D.2, Feneryolu - Kadkoy	Entity	IFSR, NPWMD
CARVANA COMPANY	Number 39, Alvand St., 1st Floor, Argentine Square	Entity	IFSR, NPWMD
MACHINE PARDAZAN CO.	Number 39, Alvand St., 1st Floor, Argentine Square	Entity	IFSR, NPWMD
JAFARI, Mohammad Javad	Number 7 Daftari, Dawudieh, Shariati Avenue	Individual	IFSR, NPWMD
FALSAFI, Mahin	Number 7 Daftari, Dawudieh, Shariati Avenue	Individual	IFSR, NPWMD
JAFARI DOLATABADI, Abbas	Tehran Revolutionary and Public Court, Office of Tehran Prosecutor, Arag Circle	Individual	IRAN-HR
BASIJ RESISTANCE FORCE		Entity	IRAN-HR, IRGC
BEHNAM SHAHRIYARI TRADING COMPANY	Ziba Building, 10th floor, North Sohrevardi Street	Entity	IFSR, SDGT
MEHR-E EQTESAD-E IRANIAN INVESTMENT COMPANY	No. 18, Iranian Building, 14th Alley, Ahmad Qassir Street, Argentina Square	Entity	IFSR, IRGC, NPWMD
TIDEWATER MIDDLE EAST CO.	No. 80, Tidewater Building, Vozara Street, Next to Saie Park	Entity	IRGC,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IRAN AIR	P.O. Box 13185-775, Mehrabad Airport	Entity	IFSR, NPWMD
IRANAIR TOURS	191 Motah-hari Ave., Dr. Mofatteh Crossroads	Entity	IFSR, NPWMD
MAHAN AIR	No. 21, Mahan Air Tower, Azadegan Street, Jenah Expressway, Beginning of Sheykh Fazlollah Exp. Way, First of Karaj High Way	Entity	IFSR, SDGT
SHAKURI, Gholam		Individual	IFSR, IRGC, SDGT
GALLIOT MARITIME INC	c/o Hafiz Darya Shipping Co, No. 60, Ehteshamiyeh Square, 7th Ney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INDUS MARITIME INC	c/o Hafiz Darya Shipping Co, No. 60, Ehteshamiyeh Square, 7th Ney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KAVERI MARITIME INC	c/o Hafiz Darya Shipping Co, No. 60, Ehteshamiyeh Square, 7th Ney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MELODIOUS MARITIME INC	c/o Hafiz Darya Shipping Co, No. 60, Ehteshamiyeh Square, 7th Ney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MOUNT EVEREST MARITIME INC	c/o Hafiz Darya Shipping Co, No. 60, Ehteshamiyeh Square, 7th Ney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RISHI MARITIME INC	c/o Hafiz Darya Shipping Co, No. 60, Ehteshamiyeh Square, 7th Ney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IRAN CENTRIFUGE TECHNOLOGY COMPANY	Yousef Abad District, No. 1, 37th Street	Entity	IFSR, NPWMD
MODERN INDUSTRIES TECHNIQUE COMPANY	North Amirabad St., 21 St, No. 37	Entity	IFSR, NPWMD
PAYA PARTOV CO.	No. 128 - Mahestan, 7th Street, Iran Zamin Ave., San'at Square	Entity	IFSR, NPWMD
PARTO SANAT CO.	2417 Valiasr Ave., Next to 14th Street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NEKA NOVIN	Unit 7, No. 12, 13th Street, Mir-Emad St., Motahary Avenue	Entity	IFSR, NPWMD
THE NUCLEAR REACTORS FUEL COMPANY	61 Shahid Abtahi St., Karegar e Shomali	Entity	IFSR, NPWMD
FULMEN GROUP	167, Darya Blvd, Saadat Abad, 1466983565	Entity	IFSR, NPWMD
YASA PART	West Lavansai	Entity	IFSR, NPWMD
NOOR AFZAR GOSTAR COMPANY	4th Floor, Bloc 1, Building 133, Mirdamad Avenue	Entity	IFSR, NPWMD
SIMATIC DEVELOPMENT CO.		Entity	IFSR, NPWMD
KHALILI, Jamshid	Third Floor, Number 143, Dr. Lavasani Avenue, Farmanieh Avenue	Individual	IFSR, NPWMD
BIIS MARITIME LIMITED	147/1 St. Lucia Street	Entity	IFSR, NPWMD
ISIM ATR LIMITED	147/1 St. Lucia Street	Entity	IFSR, NPWMD
ISIM SININ LIMITED	c/o Irano Hind Shipping Company, PO Box 15875, Mehrshad Street, Sadaghat Street, Opposite of Park Mellat, Vali-e-Asr Ave.	Entity	IFSR, NPWMD
AL-QA'IDA KURDISH BATTALIONS		Entity	SDGT
POUYA AIR	Mehrabad International Airport, Next to Terminal No. 6	Entity	IFSR, IRGC, SDGT
BEHINEH TRADING		Entity	IFSR, SDGT
IRAN MARINE INDUSTRIAL COMPANY, SADRA	3rd Floor Aftab Building, No. 3 Shafagh Street, Dadman Blvd, Phase 7, Shahrak Ghods, P.O. Box 14665-495	Entity	IFSR, IRGC, NPWMD
DEEP OFFSHORE TECHNOLOGY COMPANY, P.J.S.	1st Floor, Sadra Building, No. 3, Shafagh Street, Shahid Dadman Boulevard, Paknejad Boulevard, 7th Phase, Shahrake-E-Quds	Entity	IFSR, IRGC, NPWMD
DATAK TELECOM	No. 14, Enbe E Yamin Street, North Sohrevardi Ave.	Entity	HRIT-IR
EGHTESAD NOVIN BANK	Vali Asr Street, Above Vanak Circle, across Niayesh, Esfandiari Blvd., No. 24	Entity	IRAN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PARSIAN BANK	Keshavarz Blvd., No. 65, Corner of Shahid Daemi St., P.O. Box 141553163	Entity	IRAN
PASARGAD BANK	Valiasr St., Mirdamad St., No. 430	Entity	IRAN
KARAFARIN BANK	Zafar St. No. 315, Between Vali Asr and Jordan	Entity	IRAN
SAMAN BANK	Vali Asr. St. No. 3, Before Vey Park intersection, corner of Tarakesh Dooz St,	Entity	IRAN
SARMAYEH BANK	Sepahod Gharani No. 24, Corner of Arak St.	Entity	IRAN
TAT BANK	Shahid Ahmad Ghasir (Bocharest), Shahid Ahmadian (15th) St., No. 1	Entity	IRAN
BANK-E SHAHR	Sepahod Gharani, Corner of Khosro St., No. 147	Entity	IRAN
DEY BANK	Bokharest St., 1st St., No. 13	Entity	IRAN
HEKMAT IRANIAN BANK	Argentine Circle, beginning of Africa St., Corner of 37th St., (Dara Cul-de-sac), No.26	Entity	IRAN
TOURISM BANK	Vali Asr St., above Vey Park, Shahid Fiazi St., No. 51, first floor	Entity	IRAN
IRAN ZAMIN BANK	Seyyed Jamal-oldin Asadabadi St., Corner of 68th St., No. 472	Entity	IRAN
MEHR IRAN CREDIT UNION BANK	Taleghani St., No.204, Before the intersection of Mofateh, across from the former U.S. embassy	Entity	IRAN
JOINT IRAN-VENEZUELA BANK	Ahmad Ghasir St. (Bokharest), Corner of 15th St., Tose Tower, No.44-46	Entity	IRAN
TOSEE TAAVON BANK	Mirdamad Blvd., North East Corner of Mirdamad Bridge, No. 271	Entity	IRAN
ISLAMIC REGIONAL COOPERATION BANK	Building No. 59, District 929, Street No. 17, Arsat Al-Hindia, Al Masbah	Entity	IRAN
CREDIT INSTITUTION FOR DEVELOPMENT	53 Saanee, Jahan-e Koodak, Crossroads Africa St.	Entity	IRAN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MALEK ASHTAR UNIVERSITY OF TECHNOLOGY	Shahid Baba'i Highway, Lavizan	Entity	IFSR, NPWMD
MINISTRY OF DEFENSE LOGISTICS EXPORT	PO Box 16315-189, Tehran, Iran, located on the west side of Dabestan Street, Abbas Abad District	Entity	IFSR, NPWMD
PENTANE CHEMISTRY INDUSTRIES	5th Floor, No. 192, Darya and Paknejad Blv. Cross Section, Shahrak Gharb	Entity	IFSR, NPWMD
HAJI KHAIRULLAH HAJI SATTAR MONEY EXCHANGE	Chohar Mir Road, Qandahari Bazaar	Entity	SDGT
INFORMATION SYSTEMS IRAN	PO Box 15875-4337	Entity	IFSR, NPWMD
ELECTRONIC COMPONENTS INDUSTRIES CO	Mirzaye Shirazi Boulevard, Sanaye Square	Entity	IFSR, NPWMD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	No. 5, Golestan Alley, Shahid Ghasemi St., 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Entity	IFSR, NPWMD
DIGITAL MEDIA LAB	No. 5, Golestan Alley, Ghasemi St., 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Entity	IFSR, NPWMD
MOBILE VALUE-ADDED SERVICES LABORATORY	8th Floor, Azadi St., 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Entity	IFSR, NPWMD
RABIEE, Hamid Reza		Individual	IFSR, NPWMD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NITC Building, 67-88, Shahid Atefi Street, Africa Avenue	Entity	IRAN
PARS PETROCHEMICAL SHIPPING COMPANY	1st Floor, No. 19, Shenasa Street, Vali E Asr Avenue	Entity	IRAN
CENTER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COOPERATION		Entity	IFSR, NPWMD
BAQIYATTALLAH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Vanak Square, Molla-Sadra Avenue, Box number: 19945	Entity	IFSR, IRGC,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IMAM HOSSEIN UNIVERSITY	Near Fourth Square, Tehran Pars, Shahid Babaie Highway, near Hakimiyeh and Mini-city	Entity	IFSR, IRGC, NPWMD
TEHRAN GOSTARESH COMPANY, P.J.S.	No. 24, 5th Alley, Khaled Eslamboli Street	Entity	IFSR, IRGC, NPWMD
JALILI, Rasool	90 Park Ave, Farahzadi St	Individual	IRAN-TRA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Bahrestan Square, Avenue Kamalolmolik	Entity	IRAN-TRA
PRESS SUPERVISORY BOARD		Entity	IRAN-TRA
AMNAFZAR GOSTAR-E SHARIF	5th Floor, No. 35, Qasemi St, North Side of Sharif University, Azadi Avenue	Entity	IRAN-TRA
PEYKASA	No. 10, #4 Alley, Sadeghi Street, West Corner of Sharif University, Zazadi Avenue	Entity	IRAN-TRA
CENTER TO INVESTIGATE ORGANIZED CRIME		Entity	IRAN-TRA
IRAN POOYA	No. 8, Haqani Exp. Way, Vanak Sq., 15187	Entity	IFSR, NPWMD
RAHAT LTD	Room 33, 5th Floor, Sarafi Market	Entity	SDGT
ARIA NIKAN MARINE INDUSTRY	Suite 1, 59 Azadi Ali North Sohrevardi Avenue	Entity	IFSR, NPWMD
POUYA CONTROL	No. 2, Sharif Alley, Before Yakchal St., After Golhak St., Shariati St.	Entity	IFSR, NPWMD
NEDA INDUSTRIAL GROUP	Address Number 10 & 12, 64th Street, Yousef Abad Avenue	Entity	IFSR, NPWMD
TOWLID ABZAR BORESHI IRAN	Northwest of Karaj at Km 55 Qazvin (alt. Ghazvin) Highway, Haljerd	Entity	IFSR, NPWMD
RAHIMYAR, Amir Hossein	#15, Golestan Alley, Baradaran Shahid Rahimi St., Imam Khomeini Ave., Lavasan	Individual	IFSR, NPWMD
TARH O PALAYESH		Entity	IFSR, NPWMD
FARATECH	Ghezelbash 15, Tohid St.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CHEMICAL INDUSTRIES & DEVELOPMENT OF MATERIALS GROUP	P.O. Box 19585/311, Tehran, Iran	Entity	IFSR, NPWMD
SAD IMPORT EXPORT COMPANY	Haftom Tir Square, South Mofteh Ave., PO Box 1584864813	Entity	IFSR, NPWMD
DOOSTAN INTERNATIONAL COMPANY	16 (former 14) Fajr Street, Ostad Motahari Avenue	Entity	IFSR, NPWMD
MARINE INDUSTRIES ORGANIZATION	Pasdaran Av., PO Box 19585/777	Entity	IFSR, NPWMD
AL-ZAHRANI, Ahmed Abdullah Saleh al-Khazmari		Individual	SDGT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Jamejam Street, Valiasr Avenue	Entity	IRAN-TRA
IRANIAN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O. Box 15598-4415, 1631713761	Entity	IRAN-TRA
ABAN AIR	No.14, Imam Khomeini Airport, Airport Cargo Terminal	Entity	IFSR, NPWMD
EVEREX	Office 14, Cargo Terminal, Imam Khomeini International Airport	Entity	IFSR, NPWMD
DFS WORLDWIDE	No. 53 Mollasadra Avenue, P.O. Box 1991614661	Entity	IFSR, NPWMD
KISH PROTECTION & INDEMNITY	Flt No. 9, No. 78, Vaali Nejad Alley, Africa Blvd	Entity	IRAN-TRA
CENTRAL INSURANCE OF IRAN	No. 223 N. East St., Africa Ave.	Entity	IRAN-TRA
SORINET COMMERCIAL TRUST (SCT) BANKERS	1808, 18th Floor, Grosvenor House Commercial Tower, Sheik Zayed Road	Entity	IFSR, NPWMD
ALUMINAT	Unit 38, 5th Floor, No. 9, Golfam Avenue, Africa Avenue	Entity	IFSR, NPWMD
PARS AMAYESH SANAAT KISH	3rd Floor, No. 6, East 2nd, North Kheradmand, Karimkhan Street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TAGHTIRAN KASHAN COMPANY	Flat 2, No. 3, 2nd Street, Azad-Abadi Avenue	Entity	IFSR, NPWMD
PISHRO SYSTEMS RESEARCH COMPANY		Entity	IFSR, NPWMD
IRANIAN-VENEZUELAN BI-NATIONAL BANK	Tosee Building Ground Floor, Bokharest Street 44-46	Entity	IFSR, NPWMD
ZOLAL IRAN COMPANY	No. 2 Shariati Avenue, Niyam Street	Entity	IFSR, NPWMD
BANDAR IMAM PETROCHEMICAL COMPANY	North Kargar Street	Entity	IRAN
BOU ALI SINA PETROCHEMICAL COMPANY	No. 17, 1st Floor, Daman Afshar St., Vanak Sq., Vali-e-Asr Ave	Entity	IRAN
MOBIN PETROCHEMICAL COMPANY	South 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 Postal Box: 75391-418	Entity	IRAN
NOURI PETROCHEMICAL COMPANY	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	Entity	IRAN
PARS PETROCHEMICAL COMPANY	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 PO Box 163-75391	Entity	IRAN
SHAHID TONDGOOYAN PETROCHEMICAL COMPANY	Petrochemical Special Economic Zone (PETZONE)	Entity	IRAN
SHAZAND PETROCHEMICAL COMPANY	No. 68, Taban St., Vali Asr Ave.	Entity	IRAN
TABRIZ PETROCHEMICAL COMPANY	Off Km 8, Azarshahr Road, Kojuvar Road	Entity	IRAN
ANDISHEH ZOLAL	42 Niam Street, Shariati Avenue, P.O. Box 15875-4159	Entity	IFSR, NPWMD
UKRAINIAN-MEDITERRANEAN AIRLINES	7 Shulyavska Street	Entity	IFSR, SDGT
COMMITTEE TO DETERMINE INSTANCES OF CRIMINAL CONTENT	Sure-Esrafil St	Entity	IRAN-TRA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OFOGH SABERIN ENGINEERING DEVELOPMENT COMPANY	Shahid Malek Lu Street, No. 86	Entity	IRAN-TRA
JAM PETROCHEMICAL COMPANY	Pars Special Economic Zone	Entity	EO13622
EXECUTION OF IMAM KHOMEINI'S ORDER	Khaled Stamboli St.	Entity	IRAN
TOSEE EQTESAD AYANDEHSAZAN COMPANY	39 Gandhi Avenue	Entity	IRAN
TADBIR ECONOMIC DEVELOPMENT GROUP	16 Avenue Bucharest	Entity	IRAN
TADBIR INVESTMENT COMPANY		Entity	IRAN
TADBIR 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	Block 1, Mehr Passage, 4th Street, Iran Zamin Boulevard, Shahrak Qods	Entity	IRAN
TADBIR ENERGY DEVELOPMENT GROUP CO.	6th Floor, Mirdamad Avenue, No. 346	Entity	IRAN
REY INVESTMENT COMPANY	2nd and 3rd Floors, No. 14, Saba Boulevard, After Esfandiar Crossroad, Africa Boulevard	Entity	IRAN
AMIN INVESTMENT BANK	No. 51 Ghobadiyan Street, Valiasr Street	Entity	IRAN
PARDIS INVESTMENT COMPANY		Entity	IRAN
MELLAT INSURANCE COMPANY	No. 48, Haghani Street, Vanak Square, Before Jahan-Kodak Cross	Entity	IRAN
IRAN & SHARGH COMPANY	827, North of Seyedkhandan Bridge, Shariati Street, P.O. Box 13185-1445	Entity	IRAN
IRAN & SHARGH LEASING COMPANY	1st Floor, No. 33, Shahid Atefi Alley, Opposite Mellat Park, Vali-e-Asr Street	Entity	IRAN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TADBIR BROKERAGE COMPANY	Unit C2, 2nd Floor, Building No. 29, Corner of 25th Street, After Jahan Koudak, Cross Road Africa Street	Entity	IRAN
ZARIN RAFSANJAN CEMENT COMPANY	2nd Floor, No. 67, North Sindokht Street, West Dr. Fatemi Avenue	Entity	IRAN
RISHMAK PRODUCTIVE & EXPORTS COMPANY	Rishmak Cross Rd., 3rd Km. of Amir Kabir Road	Entity	IRAN
BEHSAZ KASHANE TEHRAN CONSTRUCTION CO.	No. 40, East Street Journal, North Shiraz Street, Sadra Avenue	Entity	IRAN
ROYAL ARYA CO.		Entity	IRAN
HORMOZ OIL REFINING COMPANY	Next to the Current Bandar Abbas Refinery	Entity	IRAN
GHAED BASSIR PETROCHEMICAL PRODUCTS COMPANY	No. 15, Palizvani (7th) Street, Gandhi (South) Avenue	Entity	IRAN
PERSIA OIL & GAS INDUSTRY DEVELOPMENT CO.	7th Floor, No. 346, Mirdamad Avenue	Entity	IRAN
PARS OIL CO.		Entity	IRAN
COMMERCIAL PARS OIL CO.	9th Floor, No. 346, Mirdamad Avenue	Entity	IRAN
MARJAN PETROCHEMICAL COMPANY	Ground Floor, No. 39, Meftah/Garmsar West Alley, Shiraz (South) Street, Molla Sadra Avenue	Entity	IRAN
GHADIR INVESTMENT COMPANY	341 West Mirdamad Boulevard	Entity	IRAN
SADAF PETROCHEMICAL ASSALUYEH COMPANY		Entity	IRAN
POLYNAR COMPANY	No. 58, St. 14, Qanbarzadeh Avenue, Resalat Highway	Entity	IRAN
PARS MCS	2nd Floor, No. 4, Sasan Dead End, Afriqa Avenue, After Esfandiar, Crossroads	Entity	IRAN
OIL INDUSTRY INVESTMENT COMPANY	No. 83, Sepahbod Gharani Street	Entity	IRAN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QODS AVIATION INDUSTRIES	P.O. Box 15875-1834, Km 5 Karaj Special Road	Entity	IFSR, NPWMD
FAN PARDAZAN	P.O. Box 15875-1834, Km 5 Karaj Special Road	Entity	IFSR, NPWMD
IRAN AVIATION INDUSTRIES ORGANIZATION	Karaj Special Road, Mehrabad Airport	Entity	IFSR, NPWMD
ERTEBAT GOSTAR NOVIN	Unit 207, No. 20 Salehi Boulevard, Tarasht	Entity	IFSR, NPWMD
EYVAZ TECHNIC MANUFACTURING COMPANY	Sharia'ati St., Shahid Hamid Sadik Alley, Building 3, Number 3	Entity	IFSR, NPWMD
THE EXPLORATION AND NUCLEAR RAW MATERIALS PRODUCTION COMPANY		Entity	IFSR, NPWMD
MARO SANAT COMPANY	North Drive Moftah Street, Zahra Street, Placard 9, Ground Floor	Entity	IFSR, NPWMD
NAVID COMPOSITE MATERIAL COMPANY	No. 3, Alley 23, 16th Janbazan Street, North Kargar Avenue	Entity	IFSR, NPWMD
NEGIN PARTO KHAVAR	Fatmi Gharabi Street, between Sindokht and Etamad Zadeh, Block 307, Floor 3, Unit 7	Entity	IFSR, NPWMD
AL-NAKHALAH, Ziyad		Individual	SDGT
TIVA SANAT GROUP	Alley 10 and 3/10, No. 10, Behrestan Street, Sajad Boulevard	Entity	IFSR, NPWMD
TIVA KARA CO. LTD.	3rd Floor, Block No. 3, North Pasdaran Street, 12th Narenjestan Alley, Before Aghdasie T-Junction Aqdaseya Saraya	Entity	IFSR, NPWMD
TIVA POLYMER CO.	Number 3, 12th Narenj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TIVA DARYA	Number 3, 12 Narenjestan Street, Pasdaran Avenue	Entity	IFSR, NPWMD
SAZEH MORAKAB CO. LTD	Unit 1, Third Floor, No. 183 Rashid St.	Entity	IFSR, NPWMD

회사이름	주소	타입	프로그램
HAJI BASIR AND ZARJ MIL COMPANY HAWALA	Sanatan (variant Sanatin) Bazaar, Sanatan Bazaar Street, near Trench (variant Trench) Road	Entity	SDGT
KHAVARMIANEH BANK	No. 22, Second Floor Sabounchi St., Shahid Beheshti Ave.	Entity	IRAN
GHAVAMIN BANK	No. 252 Milad Tower, Beginning of Africa Blvd., Argentina Sq	Entity	IRAN
GHARZOLHASANEH RESALAT BANK	Biside the No. 1 Baghestan Alley, Saadat Abad Ave., Kaj Sq.	Entity	IRAN
KISH INTERNATIONAL BANK	NBO-9, Andisheh Blvd, Sanayi Street	Entity	IR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O. Box 11365-3486	Entity	IFSR, NPWMD
THE ORGANIZATION OF DEFENSIVE INNOVATION AND RESEARCH		Entity	IFSR, NPWMD
CASPIAN AIRLINES	Mehrabad International Airport	Entity	IFSR, SDGT
MERAJ AIR	Meraj Blvd., First of Mohammad Ali Ave., Azadi Sq.	Entity	IFSR, SDGT
JAHAN TECH ROOYAN PARS	B18, Takhte-e-Jamshid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	Entity	IFSR, NPWMD
MANDEGAR BASPAR KIMIYA COMPANY	No. 510, 5th Floor, Saddi Trading Building, South SAA DI Street	Entity	IFSR, NPWMD
DOURAN SOFTWARE TECHNOLOGIES	Gha'em Magham Farahani St., Sho'a Square, Khadri St, Block 20	Entity	IRAN-TRA

〈부록 XIII〉 중계무역 식료·농산품 (HS4자리 기준 238개)

순번	HS	품 명
1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2	0102	소
3	0103	돼지
4	0104	면양과 산양
5	0105	가금류
6	0106	기타의 산 동물
7	0201	쇠고기
8	0202	쇠고기
9	0203	돼지고기
10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
11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12	0206	식용설육(脬肉)
13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14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15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16	0210	육과 식용설육
17	0301	활어
18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19	0303	냉동어류
20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21	0305	건조·염장·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22	0306	갑각류
23	0307	연체동물
24	0308	수생무척추동물
25	0401	밀크와 크림
26	0402	밀크와 크림
27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

순번	HS	품 명
		된 밀크와 크림
28	0404	유장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29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 데어리 스프레드
30	0406	치즈와 커드
31	0407	조란
32	0408	조란
33	0409	천연꿀
34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35	0501	인모와 그 웨이스트
36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37	0504	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38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 새의 솜털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39	0506	뼈와 혼코어,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40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41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 뼈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42	0510	용연향·해리향·시뫼와 사향·캔대리디즈·담즙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
43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44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45	0602	기타의 산 식물·삼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46	0603	절화와 꽃봉오리
47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과 풀·이끼 및 지의
48	0701	감자
49	0702	토마토
50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51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
52	0705	상추 및 치커리
53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샐러리악·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54	0707	오이류
55	0708	채두류

순번	HS	품 명
56	0709	기타의 채소
57	0710	냉동채소
58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59	0712	건조한 채소
60	0713	건조한 채두류
61	0714	매니옥·취뿌리·살렘·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및 사교야자의 수
62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
63	0802	기타의 견과류
64	0803	바나나
65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
66	0805	감귤류의 과실
67	0806	포도
68	0807	멜론과 포포우
69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
70	0809	살구·버찌·복숭아·자두 및 슬로우
71	0810	기타 과실
72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73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74	0813	건조한 과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75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의 껍질
76	0901	커피·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77	0902	차류
78	0903	마태
79	0904	후추 및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80	0905	바닐라
81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82	0907	정향
83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84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85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86	1001	밀과메슬린
87	1002	호밀
88	1003	보리
89	1004	귀리

순번	HS	품 명
90	1005	옥수수
91	1006	쌀
92	1007	수수
93	1008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94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95	1102	곡분
96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펠리트
97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98	1105	감자의 분·플레이크·펠리트
99	1106	건조한 채두류 및 과실의 분
100	1107	맥아
101	1108	전분과 이눌린
102	1109	밀의 글루텐
103	1201	대두
104	1202	낙화생
105	1203	코프라
106	1204	아마인
107	1205	유채씨
108	1206	해바라기씨
109	1207	기타 채유용종자와 과실
110	1208	채유용종자·과실의분·조분
111	1209	과중용의종자·과실
112	1210	호프
113	1211	향료·의료용식물성생산물
114	1212	식용의 기타식물성생산물
115	1213	곡물의 짚과 껍질
116	1214	사료용식물
117	1301	락·천연검·수지
118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119	1501	돈지
120	1502	소·양의 지방
121	1503	라드유
122	1504	어유·경유(鯨油)
123	1505	울그리스
124	1506	기타 동물성유지

순번	HS	품 명
125	1507	대두유
126	1508	낙화생유
127	1509	올리브유
128	1510	기타올리브유
129	1511	팜유
130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면실유
131	1513	야자유
132	1514	유채유 · 겨자유
133	1515	기타식물성유지
134	1516	수소첨가 · 인터에스텔화한유지
135	1517	마가린
136	1518	변성유지 및 비식용유지
137	1520	글리세롤
138	1521	동식물성납
139	1522	테그라스
140	1601	소시지
141	1602	육류의 기타조제품
142	1603	육 · 어류의 엑스와 즙
143	1604	어류조제품 · 캐비아
144	1605	갑각류 · 연체동물의 조제품
145	1701	사탕수수당
146	1702	기타의 당류
147	1703	당밀
148	1704	설탕과자
149	1801	코코아두
150	1802	코코아의 각 · 피
151	1803	코코아페이스트
152	1804	코코아버터
153	1805	코코아분말
154	1806	초코렛과 코코아조제품
155	1901	곡분 · 밀크의 조제품
156	1902	파스타
157	1903	타피오카
158	1904	콘플레이크 및 기타 가공한 곡물
159	1905	베이커리제품

순번	HS	품 명
160	2001	식초·초산 처리한 채소·과실
161	2002	토마토조제품
162	2003	버섯조제품
163	2004	기타냉동한 채소조제품
164	2005	기타채소조제품
165	2006	설탕 처리한 채소·과실
166	2007	잼·과실제리
167	2008	기타과실·견과류의 조제품
168	2009	주스
169	2101	커피·차·마태의 조제품
170	2102	효모·베이킹파우더
171	2103	소스·혼합조미료·겨자분
172	2104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73	2105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174	2106	기타 조제식료품
175	2201	물
176	2202	음료
177	2209	식초
178	2301	비식용의 육·어류의 분
179	2302	밀기울
180	2303	전분박·비트펄프·버개스
181	2304	대두의 오일케이크
182	2305	낙화생의 오일케이크
183	2306	기타의 오일케이크
184	2308	사료용의 식물성물질
185	2309	사료용 조제품
186	2501	소금
187	2936	비타민
188	3101	동식물성비료
189	3102	질소비료
190	3103	인산비료
191	3104	칼륨비료
192	3105	복합비료
193	4101	소의 원피
194	4102	양의 원피

순번	HS	품 명
195	4103	기타의 원피
196	4301	생모피
197	5001	누에고치
198	5002	생사
199	5003	견웨이스트
200	5004	견사
201	5005	견방사
202	5006	소매용 견사·견방사
203	5007	견직물
204	5101	카드·코움하지 않은 양모
205	5102	카드·코움하지 않은 수모
206	5103	양모·수모의 웨이스트
207	5104	양모·수모의 가아넷스톡
208	5105	카드·코움한 양모·수모
209	5106	카드한 양모사
210	5107	코움한 양모사
211	5108	섬수모사
212	5109	소매용 양모사·섬수모사
213	5110	조수모사·마모사
214	5111	카드한 양모·섬수모 직물
215	5112	코움한 양모·섬수모 직물
216	5113	조수모·마모제 직물
217	5201	카드·코움하지 않은 면
218	5202	면웨이스트
219	5203	카드·코움한 면
220	5204	면 재봉사
221	5205	면 85% 이상의 면사
222	5206	면 85% 미만의 면사
223	5207	소매용 면사
224	5208	면 85% 이상·200g/m ² 이하
225	5209	면 85% 이상·200g/m ² 초과
226	5210	면 85% 미만·200g/m ² 이하
227	5211	면 85% 미만·200g/m ² 초과
228	5212	기타 면직물
229	5301	아마

순번	HS	품 명
230	5302	대마
231	5303	황마
232	5305	기타 식물성섬유
233	5306	아마사
234	5307	황마사
235	5308	기타 식물성섬유사
236	5309	아마직물
237	5310	황마직물
238	5311	기타 식물성직물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이란

2014년 12월 23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6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